



▣ 참여연구진

저 자 최정우, 전성만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정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전성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요약

## 1. 연구배경

### □ 소방사무의 외부성 및 소방사무 수요의 증가에 따른 자원 확보의 어려움

- 소방서비스는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가장 주요한 서비스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소방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혼재, 소방인력의 증가, 소방행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수요에 대응한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됨
-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사무 재원 8.7조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4.5조원으로 전체 세입의 62.4%를 차지하여(한재명, 2023)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지자체별 소방서비스의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음
- 소방사무는 화재에 대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구조구급 등이 강화되어 소방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소방직 공무원 2만명 충원에 따른 소방인건비 증가 등으로 소방재원의 지출수요는 증가추세임

### □ 지방의 소방 인건비로 인한 재정부담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자원 분담 기능에 대한 검토 필요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자원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고, 2020년 소방직 국가직화와 연계하여 신규채용되는 약2만명의 인건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인건비를 감안할 경우 자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규모는 정체되고 있어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부담의 적정성, 인건비 우선 사용에 따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

## 2. 연구목적 및 방법

###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소방직 공무원 충원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부족분에 대한 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첫째, 2017년~2022년 간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약 2만명의 소방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규모 재원분담 수준 분석
  - 둘째,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 마련

### □ 연구방법

- 이 연구는 2025년을 분석의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전국 시·도 및 소방본부를 별도로 운영하는 창원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함
- 선행연구 검토, 관련 법령 검토, 현황 분석, 전문가 FGI 결과 등을 종합하여 소방 인건비에 대한 재원확충방안을 모색함
  - 국내·외 학술논문, 국책 연구기관 및 시·도연구원 보고서 등의 검토를 통해 소방사무의 특징,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 시 쟁점 등을 분석하고 소방재원 확충 대안을 마련함
- 소방재정의 경직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입·세출,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함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소방청 통계연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방분야 재정의 세입·세출,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함

## 3. 분석 결과

### □ 지방 소방분야 재정 및 소방안전교부세 현황 분석 결과

- 지방분야의 소방분야 재정에서 지방의 부담수준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소방분야의 재정 구조가 세입 안정성 등이 감소하고,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경직성 지출이 많아 취약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세입과 관련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로서 지방 소분야 재정의 가장 주요한 세원이나, 지출 증가수준에 비해 세수 신장 수준이 높지 않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재원 확보 또한 담배소비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특성상 금연정책의 지속으로 세수 안정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하는 실정임
- 세출과 관련하여 세출의 상당 부분은 소방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 개선, 그리고 화재예방 등에 대한 정책사업비는 지출이 크지 않은 구조이며 인건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그리고 인건비의 지출 절감 등이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할 경우 소방분야의 지출의 경직성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소방안전교부세는 재원 규모가 크지 않고, 소방안전교부세 또한 담배분 개별 소비세라는 단일 세원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조정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 □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분담 분석 결과

- 소방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의 분담 비율은 2017년 61.3%에서 2023년 59.7% 수준으로 인건비 분담 수준이 2020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도출됨
  - 충원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2020년 5,470억원에서 2023년 9,180 억원으로 분석기간 동안 연평균 18.8% 증가함
- 소방안전교부세 또한 동기간 연평균 18.2% 증가하였으나 소방공무원의 승진 등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나며,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감소 등으로 인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분담 수준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소방공무원의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감소분을 고려할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2020년 1,329억원, 2023년 2,561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4. 소방공무원 인건비 재원 마련의 개선방안

- 소방공무원 인건비 재원 마련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거나, 지역간 재원배분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방안은 지양하여 마련함
- 2만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확충방안은 ①2026년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 일부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소방인건비에 활용하는 방안, ②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소방안전교부세로의 배분 비율의 상향, ③지역자원시설세의 개편 등을 제시함
  - 인건비 부족분 3,698억원에 대해 지방교육세분 담배소비세 활용은 3,585억원, 담배분 개별소비세 배분 비율 인상은 4,39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개편은 4,725억원의 재원이 확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담배소비세의 활용은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담배분 개별소비세분 활용은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재정당국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활용은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가중시켜 갈등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5. 정책 제언

### □ 소방사무의 외부성, 및 공동사무 분석을 통한 중앙-지방 간 재원 부담 원칙 설정 및 관계 법률 정비

- 소방 관계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소방사무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자치사무, 국가사무, 공동사무를 중심으로 사무 특성을 분석하여 사무특성에 기인한 재정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소방사무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명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소방 조직에 관한 법률 제정 등과 관련한 법안 등이 발의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사무 구분 및 공동사무의 처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국가직 공무원 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 필요

- 소방사무가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자치경찰 사례를 준용하여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므로 현 시점에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점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인건비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분담 비율을 설정하여 점차적으로 이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신세원 발굴 필요

- 장기적으로는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신세원 발굴이 필요함.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에 의존하는 소방 재원은 세수의 안정성 및 충분성 등에 한계가 있고 결국 세수의 취약성이 심화될 수 있음
- 소방의 기능이 부수적인 행정기능이 아니라 재난의 복잡화,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방사무의 다양화 등으로 정부의 주요 행정서비스로 기능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목적세 외에도 보통세를 활용한 소방재원 확충 방안이 필요함

- 신세원 발굴과 관련하여 화재보험료,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보험료,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소비 등 소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물품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음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6
1. 연구범위 .....	6
2. 연구방법 .....	7

## 제 2 장 소방사무의 특징과 자원분담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소방사무의 범위 및 성격 .....	11
1. 소방사무의 개념 및 범위 .....	11
2. 소방사무의 성격 .....	15
제2절 소방분야 재정구조 및 소방교부세의 기능 .....	21
1. 소방분야 재정구조 .....	21
2. 소방안전교부세의 기능 .....	27
제3절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중앙·지방 간 자원분담 논의 .....	33
1.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자원분담의 쟁점 .....	33
2.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자원확보 관련 선행연구 검토 .....	38

## 제 3 장 지방 소방분야 재정 및 소방안전교부세 현황 분석

제1절 지방 소방분야 재정 현황 .....	43
1. 지방자치단체 소방특별회계 재정 규모 .....	43

# 목 차

2. 지방자치단체 소방특별회계 세입 .....	46
3. 지방자치단체 소방특별회계 세출 .....	52
4. 지방 소방분야 재정의 문제점 .....	58
제2절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현황 .....	61
1.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규모 .....	61
2. 기능별 지원 규모 .....	63
3. 소방안전교부세의 문제점 .....	69

## 제 4 장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부담 수준 분석 및 재원확충 방안

제1절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부담 수준 분석 .....	73
1. 분석방법 .....	73
2. 분석결과 .....	75
제2절 인건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 .....	81
1. 개선방향 .....	81
2. 인건비 부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	82

## 제 5 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89
제2절 정책 제언 .....	96
참고문헌 .....	99

# 표 목차

표 2-1	「소방기본법」상 소방사무의 정의 .....	12
표 2-2	법률에 따른 소방사무의 범위 .....	12
표 2-3	소방사무별 수요 변화 .....	14
표 2-4	사무구분과 자원분담 방식 .....	15
표 2-5	이기우 외(2004)의 사무구분 기준 .....	16
표 2-6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추57 판결문 내용 .....	16
표 2-7	「지방재정법」상 경비의 부담 규정 .....	17
표 2-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국가의 책임 관련 규정 .....	18
표 2-9	법령상 소방사무의 구분 .....	19
표 2-10	연도별 중앙119구조본부 출동 실적 .....	20
표 2-11	중앙정부 소방분야 주요 자원 .....	22
표 2-12	소방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구조 .....	23
표 2-13	지방자치단체 소방재정 주요 세입 .....	24
표 2-14	지역자원시설세 운영 개요 .....	26
표 2-15	소방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	27
표 2-16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	28
표 2-17	소방안전교부세의 성격 .....	29
표 2-18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 .....	29
표 2-19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구분 .....	31
표 2-20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 등의 지휘관련 규정 .....	33
표 2-21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개정 주요 내용 .....	34
표 2-22	2020년 당시 소방 공무원(현장인력) 충원 실적 및 계획 .....	36
표 2-23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변화 .....	37
표 2-24	소방공무원 인건비 관련 주요 선행연구 .....	39
표 2-25	선행연구의 소방자원 확충 방안 .....	40
표 3-1	지방자치단체 소방 세출 규모 .....	43
표 3-2	지방자치단체 소방분야 재정 규모 .....	45

## 표 목차

표 3-3	지방자치단체 소방분야 재정 세입구조 .....	47
표 3-4	지방자치단체 소방분야 재정 세입구조 .....	50
표 3-5	특성별 세출 .....	53
표 3-6	행정운영경비 항목별 규모 .....	54
표 3-7	자치단체별 기능별 지출 비교 .....	55
표 3-8	자치단체별 행정운영경비 지출 비교 .....	56
표 3-9	정책사업비 중 국비사업 및 지방 대응비 비율 .....	58
표 3-10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변화 .....	61
표 3-11	자치단체별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	63
표 3-12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분 규모 변화 .....	64
표 3-13	자치단체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분 규모 .....	65
표 3-14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분 규모 변화 .....	67
표 3-15	자치단체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규모 .....	68
표 4-1	인건비 산정 시 포함항목 .....	74
표 4-2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분담 분석 결과 .....	76
표 4-3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분담 분석 결과: 인천광역시 .....	78
표 4-4	연도별 총원 및 퇴직 공무원 수 변화 .....	79
표 4-5	퇴직공무원 인건비 감소분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	80
표 4-6	재원 확충방안의 실현가능성 관련 검토 기준 .....	82
표 4-7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배분액 현황 및 개선시 재원 증가액 .....	83
표 4-8	담배분 개별소비세 현황 및 개선시 재원 증가액 .....	85
표 4-9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및 개선 시 재원 증가액 .....	86
표 5-1	소방사무의 중앙·지방 사무구분 관련 주요 법률(안) 발의 내용 .....	96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	8
그림 2-1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구분 .....	30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소방 세출 규모 및 비중 .....	35
그림 3-1	지방자치단체 소방 세출 규모 및 비중 .....	44
그림 3-2	2023년 자치단체별 소방 세출 규모 .....	46
그림 3-3	지방자치단체 소방분야 재정 세입구조 .....	47
그림 3-4	2023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출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비율 .....	48
그림 3-5	2023년 일반회계 전출금 중 인건비 비중 .....	49
그림 3-6	2023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출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비율 .....	51
그림 3-7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 중 인건비 비중 .....	52
그림 3-8	분야별 세출 규모 및 행정운영경비 비율 .....	53
그림 3-9	분야별 세출 규모 및 행정운영경비 비율 .....	54
그림 3-10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변화 .....	62
그림 3-11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변화 .....	64
그림 3-12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규모 변화 .....	67
그림 3-13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담배·주류 물가상승률 비교 .....	70
그림 4-1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분담 수준 .....	77
그림 4-2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분담 수준: 인천광역시 .....	78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1절

##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소방서비스는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가장 주요한 서비스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소방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혼재, 소방인력의 증가, 소방행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수요에 대응한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됨
-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사무 채용 7.7조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4.5조원으로 전체 세입의 62.4%를 차지하여(한재명, 2023)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지자체별 소방서비스의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음
- 소방사무는 화재에 대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구조구급 등이 강화되어 소방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소방직 공무원 2만명 충원에 따른 소방인건비 증가 등으로 소방재원의 지출수요는 증가추세임
- 소방사무는 법령상 자치사무로 구분되어 있으나 개별법에서 다루는 소방 사무에는 국가사무, 공통사무, 자치사무가 혼재되어 있으며(김재호 외, 2019) 2020년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소방재원의 중앙-지방 간 자원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소방재원의 지출은 2018~2022년간 연평균 9.1% 증가하고 있으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동기간 5.8%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소방 및 안전분야의 주요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에 있어서도 안전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재원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고, 2020년 소방직 국가직화와 연계하여 신규채용되는  
2만명의 인건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인건비를 감안할 경우 재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소방안전교부세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국세인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도입됨
  - 2020년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응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인상하고, 인상분은 소방직 공무원의  
인건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함
  -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 개별  
소비세의 규모는 정체되고 있어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부담의 적정성,  
인건비 우선 사용에 따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소방행정수요의 증가, 소방사무의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분담 방안의 모색 필요**
  -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대형 및 복합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원 분담 수준은 저하되고 있음
  - 소방재원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해 손희준(2015), 김흥환 외(2018), 김성주  
외(2020), 임상빈 외(2020), 박남권 외(2021), 이영웅(2024) 등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제시된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소방분야의 재정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소방인력 2만명 확충 전 인건비  
추정, 소방 재원확충방안 제시 등에 집중되어 2만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인건비  
증가에 따른 시설 및 장비개선, 안전분야 예산 등에 대한 부작용 등의 추가 분석이  
필요**

-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료구독의 한계 등으로 인건비 지출 추정치를 사용하여, 복리후생비, 소방인력 장비 구입비 등의 간접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정확히 도출하지 못함
- 소방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해당 대안들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단기·중기적 접근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목적

- **소방직 공무원 2만명 충원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분 규모의 적정성 분석**
  - 신규 충원된 2만명의 인건비에 대한 분석 필요
  - 2017~2022년 이루어진 소방직 공무원 2만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분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 분석
- **안정적인 소방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확충 및 중앙-지방 재원분담 방안 제시**
  - 인건비 충당을 위한 신규재원 마련 방안 검토
  - 소방분야 재원 확충 대안의 실현가능성 검토

## 제2절

##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 시간적 범위

- 2025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여 관련 문헌 등을 분석함
- 제3장의 소방재정에 대한 현황분석의 경우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5년 (2020년~2024년) 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함

#### □ 공간적 범위

- 기본적으로 17개 시·도 및 소방본부를 별도로 두고 있는 창원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석함
  - 창원시의 경우 2012년 마창진 통합 특례로 인해 경남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소방본부를 운영함
- 자료구독의 한계로 인해 전국 시·도의 심층분석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천광역시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 내용적 범위

-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부담과 관련한 논거 마련을 위해 소방사무, 소방재정구조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함
  - 선행연구 검토,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통해 소방사무의 성격, 소방사무 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사무의 범위 등을 검토함
  - 소방재정 및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부담 배경 등을 검토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중앙정부의 인건비 부담 논거 등을 마련함
- 소방재정의 경직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입·세출,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함

- 소방재정과 관련한 세입구조, 재원별 변화 등을 파악하여 향후 인건비 부담에 있어서 세입측면의 문제를 도출함
  - 세출 측면에서 소방본부별 인건비, 경상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분석하여 세출에 있어서 소방본부의 문제를 도출함
  -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함
- 선행연구 검토, 관련 법령 검토, 현황 분석, 인건비 충당 수준 분석 등을 종합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한 새로운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함

##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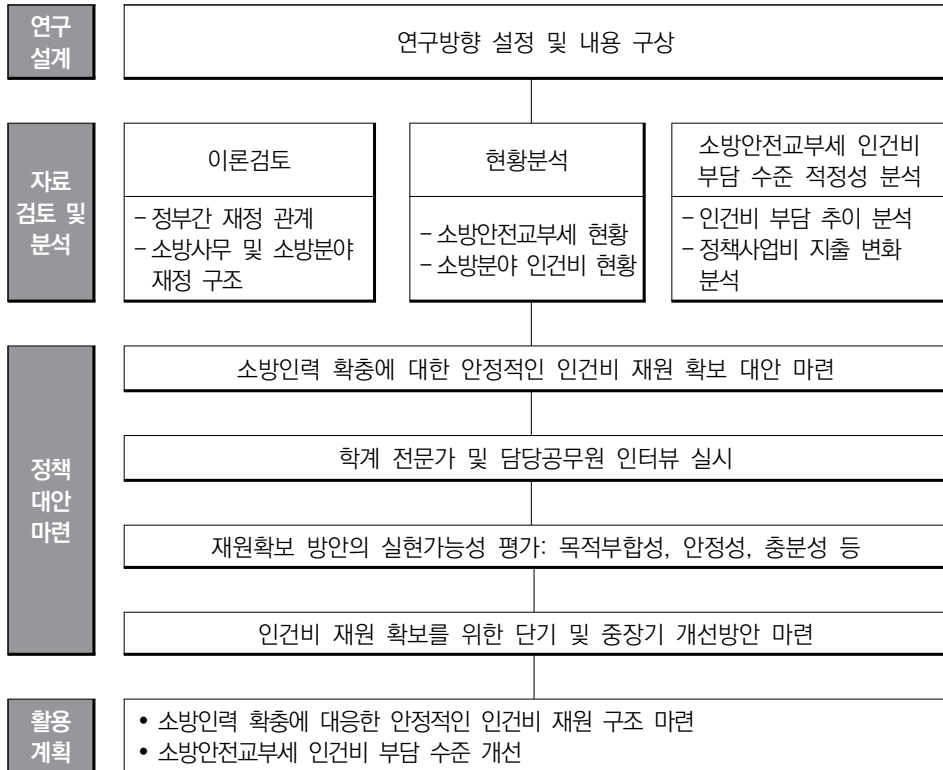
### □ 문헌연구

- 소방분야의 세입 및 세출 구조 검토,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의 쟁점, 인건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보고서, 연구보고서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함
- 소방 인력 운영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 및 소방안전교부세 개선 방안 등의 검토를 위해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함

### □ 면접조사

- 학계 전문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지원의 쟁점을 파악함
- 지방재정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청 및 행안부 공무원 등에 대한 FGI를 통해 소방 재원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함

| 그림 1-1 | 연구흐름도



## 제 2 장

---

# 소방사무의 특징과 재원분담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소방사무의 범위 및 성격

제2절 소방분야 재정구조 및  
소방안전교부세 기능

제3절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 논의



# 소방사무의 특징과 재원분담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제1절

## 소방사무의 범위 및 성격

### 1. 소방사무의 개념 및 범위

#### □ 소방사무의 개념

- 소방사무의 대상이 되는 소방의 개념에 있어 학문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소방은 화재진압과 동격으로 인식되다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사고 및 자연재해 등도 소방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개념이 확장됨(이재학 외, 2021:282)
  - 사전적 의미의 소방은 단순히 화재를 방지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진화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다만 화재를 방지하는 행위 자체가 매우 포괄적 개념이므로(김흥환 외, 2022:13) 화재를 예방하는 행위를 고려할 경우 소방의 개념은 보다 확장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진압하는 구조·구급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함(신봉수, 2005:5; 하혜수, 2008:4)
- 소방사무의 개념은 재해 및 재난 등의 예방과 사후적 대응을 중심으로 한 협의의 개념과 소방에 대한 국민 요구의 대응 및 자원 관리의 광의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음(이재학 외, 2021:283)
  - 협의의 소방사무는 일상적 업무로서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그리고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의 소방 활동을 의미함
  - 광의의 소방사무는 협의의 소방사무 외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기관의 활동 외에 다양한 인위적·자연적 재난·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포함함

【표 2-1】 「소방기본법」상 소방사무의 정의

**제23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방사무의 법적 근거와 범위

- 「소방기본법」상 소방의 역할은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지원활동으로 구성되어 소방이 단순히 화재를 방지 및 진압하는 것 외에도 재난재해 구조·구급 등 범위가 확대됨
- 소방활동은 화재, 재난피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요구되는 소화, 인명구조 및 구급 등 일련의 조치를 의미함(동법 제16조)
  - 소방지원활동은 산불 예방·진압 지원, 자연재해 대응 지원, 행사 시 사고에 대비 지원,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의미함(동법 제16조의2)
- 생활안전활동은 소방활동의 대상 이외에 붕괴, 낙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제거, 사람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의 포획·퇴치 등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요인에 대한 대응을 의미함(동법 제16조의3)
- 구체적인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법」,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화재 및 구조·구급과 밀접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방회계법)」에 명시되어 있음

【표 2-2】 법률에 따른 소방사무의 범위

근거 법률	소방사무 범위	세부 내용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제6호	화재예방·경계· 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의용소 방대의 편성·운영 및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기본계획 수립</li> <li>•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li> <li>•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li> <li>• 소방장비의 수급관리</li> <li>•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li> <li>• 화재진압·조사와 구조·구급 업무 지휘·감독</li> <li>• 소방지령실 설치·관리</li> <li>•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li> </ul>

근거 법률	소방사무 범위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응원규약 제정</li> <li>화재 예방 활동, 소방홍보 및 교육</li> <li>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의 지도·감독</li> <li>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와 업무의 지도·감독</li> <li>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감독</li> <li>의용소방대의 편성·운영 및 지도·감독</li> </ul>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소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대 출동에 의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li> </ul>
	소방지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li> <li>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시설 등 지원활동</li> <li>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li> <li>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li> <li>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li> </ul>
	생활안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li> <li>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li> <li>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li> <li>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li> <li>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li> </ul>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제3호 및 제3조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위급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구조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li> </ul>
	구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li> </ul>
	구조·구급 관련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구급 관련 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구조·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li> <li>구조·구급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 마련</li> <li>위급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li> </ul>
소방 및 구조·구급 관련 법률	그 밖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자료: 한재명 외(2023)

- 소방사무의라 소방의 행정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소방행정 수요 증가는 ①재난관리법 제정 및 소방청 개청 등 사회적 행정적 소방 환경의 변화, ②대형화재 외에도 위해가스 유출 등 재난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 ③단순 진압형의 소방업무 외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개발, 계획 및 지침 마련 등 소방의 역할 및 사무의 증가 등에 기인함(손희준, 2015:5)
  - 2014~2023년간 소방사무별 수요 변화를 보면 화재건수는 연평균 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생활안전, 구조 및 구급활동 등의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 소방사무별 수요 변화

(단위: 건)

구분	화재	구조활동	구급활동	생활안전
2014	42,135	598,560	2,389,211	333,451
2015	44,435	630,197	2,535,412	336,036
2016	43,413	756,987	2,677,749	377,575
2017	44,178	805,194	2,788,101	423,055
2018	42,338	837,628	2,924,899	396,343
2019	40,103	803,606	2,929,994	430,534
2020	38,659	838,194	2,766,136	400,103
2021	36,267	1,062,612	3,148,956	538,672
2022	40,113	1,199,183	3,564,720	520,102
2023	38,857	1,309,614	3,486,526	611,054
연평균 증가율	-0.90	9.09	4.29	6.96

주 1) 화재는 발생건수 기준, 그 외는 출동건수 기준

자료: 2024 소방청 통계연보 재구성

## 2. 소방사무의 성격

### □ 자원분담에 있어서 사무성격의 중요성

- 사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부담 주체가 결정되므로 소방 사무의 성격은 추후 논의될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마련, 인건비 외 소방사무 비용 분담 방안 마련 등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
- 사무는 일반적으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국가사무 등으로 구분하며, 국가사무의 경우는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주민등록이나 선거업무 등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도 가급적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그리고 단체위임사무의 경우는 중앙과 지방이 분담함
- 실제로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이 곤란하고,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 영역이 확대되어 최근 중앙과 지방 간 자원분담주체를 놓고 대립과 갈등이 심화됨(손희준, 2015:6)

【표 2-4】 사무구분과 자원분담 방식

구분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
경비부담 주체	전액 국가 부담	전액 국가보조 원칙	국가와 지방의 분담원칙 (보조금은 부담금적 성격)	전액 지방부담 원칙(국고지원 시 보조금적 성격)
국회·지방의회 관여	국회 관여, 지방의회 관여 불가	지방의회 관여 불가	지방의회 관여	지방의회 관여
국가감독 범위	국가자체 내부감독	적극적 감독	교정적 감독 (합법성, 합목적성)	합법성에 의하 교정적 감독에 한정
대상사무	외교, 국방 등	선거, 주민등록, 민방위대 유지 등	국도유지, 재해구호 업무 등	상하수도, 쓰레기, 지방도, 공원 등

자료: 김동기(2011), 손희준(2015)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는 ‘공동사무’로 보고 국가사무, 지방사무, 공동사무의 세 가지로 사무를 구분하기도 함(하혜수, 2008; 김홍환 외, 2022) 이러한 공동사무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이 분담하여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함

- 공동사무는 책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공동으로 귀속된 사무로, 국가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된 단체위임사무와 구분됨
- 독일에서는 헌법을 통해 공동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법에 따라 한정된 영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이 예정된 사무로 대학병원, 대학관리, 지역경제구조 개선 등임(홍준현 외, 2002; 하혜수, 2008:1135 재인용)

○ 이기우 외(2004)는 공동사무를 법령상 처리권자를 둘 이상 규정한 사무로 구분함

**표 2-5 | 이기우 외(2004)의 사무구분 기준**

구분	내용
국가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의 표현이 국가는, 대통령은, 장관은 등인 경우</li> <li>• 법령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규정 있는 사무(기관위임)</li> <li>• 법령상 지방의회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는 사무(단체위임)</li> </ul>
자치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상 사무처리 주체가 표현되지 않고 전국적·통일적 사무가 아닌 경우</li> <li>•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무</li> <li>• 법령상 처리권자가 자치단체장이나, 사무처리 시 국가의 승인·신고 사무</li> <li>• 법령상 처리권자가 자치단체장이나, 기준을 국가가 정하는 경우</li> </ul>
공동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상 처리권자를 둘 이상(국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규정한 사무</li> </ul>

자료: 이기우 외(2004), 김흥환 외(2022:30)

○ 또한 사무의 구분에 있어서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등 사무의 성격 구분에 있어서 대법원은 사무와 관련된 규정 형식 외에도 ①전국적 통일된 사무처리 필요성, ②경비부담, ③최종적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함(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추57).

**표 2-6 |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추57 판결문 내용**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사무에 따른 자원 부담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제2장(경비의 부담)에서는 자치사무의 경비(제20조), 부담금과 교부금(제21조), 그리고 경비비부담의 비율 등(제22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1조 제2항)

표 2-7 | 「지방재정법」상 경비의 부담 규정

<p><b>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b>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p> <p><b>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b>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p> <p><b>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b>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

□ 소방사무의 성격

- 소방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사무 혹은 공동사무의 성격을 지님 (손희준, 2015; 김홍환 외, 2022)
- 「지방자치법」에서는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재명 외(2023) 등은 자치사무로 인식함
-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소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급·구조, 의용소방대의 편성·운영 및 지도·감독을 명시함
- 한편 소방사무의 실제 내용 등을 토대로 소방사무가 실질적으로는 국가사무

혹은 공동사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를 근거로 손희준(2015), 김흥환 외(2022), 이영웅(2024) 등은 국가사무 혹은 공동사무로 인식함

- 소방업무의 일부인 구조·구급과 관련하여 이를 규정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구급 관련 연구·개발, 업무수행 체계 및 기반 구축, 교육·홍보 등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를 주체로 명시함

【표 2-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국가의 책임 관련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구급(이하 “구조·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구조·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김흥환 외(2022)가 소방청 소관 21개 법률 1,957개 조항을 대상으로 사무를 구분한 결과 국가사무가 79%를 차지하고 있어 소방사무에 있어 국가사무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 김흥환 외(2022)와 유사하게 송상훈 외(2012)는 소방사무와 관련한 11개 법률에 제시된 136개 사무에서 국가사무가 66건으로 48.5%를 차지하며, 공동사무는 36건으로 2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함

【표 2-9】 법령상 소방사무의 구분

(단위: 건, %)

구분	전체 조항수	국가	자치	미구분 (일반원칙, 절차, 행정규제 등)	국가사무 비율
합계	1,957	599	160	1,313	78.9
119법	102	47	3	52	94.0
국립소방병원법	57	4	0	53	100.0
다중이용업소법	66	40	1	66	97.6
재향소방동우회법	39	2	2	39	50.0
대한소방공제회법	64	5	1	59	83.3
소방공무원법	76	9	2	66	81.8
소방공무원복지법	68	34	13	21	72.3
소방기본법	159	48	13	97	78.7
소방산업진흥법	99	38	12	59	76.0
소방시설공사업법	150	22	8	122	73.3
소방시설법	193	54	10	135	84.4
화재조사법	53	25	2	28	92.6
소방장비관리법	129	76	16	48	82.6
소방회계법	13	1	2	10	33.3
위험물안전관리법	106	20	22	77	47.6
의무소방대설치법	29	2	0	27	100.0
의용소방대법	47	14	13	27	51.9
재난안전법	46	17	2	28	89.5
초고층재난관리법	82	5	18	64	21.7
소방시설법	225	74	11	146	87.1
화재예방법	155	62	9	89	87.3

주 1) 하나의 조항에 책임의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인 경우 중복 계상

2) 법률상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경우만 자치사무로 구분함

자료: 김흥환 외(2022:61)

- 특히 화재규모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소방업무의 다양성 및 복합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지방사무로의 한계를 나타냄(손희준, 2015:4)
- 소방사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 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바탕으로 사무를 처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소방사무 행정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권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출동 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재난 및 개별 자치단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재난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2-10 | 연도별 중앙119구조본부 출동 실적

(단위: 건)

구분	전체	화재	자연재해	건물붕괴
2014	689	74	1	4
2015	615	113	-	10
2016	773	236	-	3
2017	773	346	-	10
2018	1,915	1040	-	10
2019	1,746	667	-	13
2020	1,574	423	-	12
2021	1,728	482	2	6
2022	2,070	760	9	10
2023	1,711	617	-	148

주 1) 화재는 발생건수 기준, 그 외는 출동건수 기준

자료: 2024 소방청 통계연보 재구성

## 제2절

## 소방분야 재정구조 및 소방교부세의 기능

### 1. 소방분야 재정구조

#### □ 중앙정부의 소방재정 운영

- 소방분야의 재정은 소방청 및 관계부처가 운영하는 중앙재정과 각 시·도가 소방특별회계를 통해 운영하는 재정으로 구분되며, 소방청의 예산은 2024년 세출예산 기준 3,404억원에 불과하여 시·도에서 운영하는 소방특별회계(2024년 기준 7조 7,233억원)가 주요 재원임
- 중앙정부의 소방분야 재정은 세출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등 타 부처의 예산에도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소방분야의 재원은 소방청이 편성한 예산 외에도 119 구급대 지원 등에 사용되는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특수음압구급차 등 장비 지원에 사용되는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전기화재 대응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전력산업 기반기금(산업자원부) 등에 분산됨
- 2024년 기준 소방청의 세입은 4,349억원이나 타 부처의 재원까지 포함하면 소방관련 세출예산은 1조 2,466억원임
-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이며, 2017년부터 추진된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에 대응한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라 재원규모가 급격히 증가함

표 2-11 | 중앙정부 소방분야 주요 재원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4	연평균 증가율
소방청	1,208	1,778	2,033	2,553	3,404	11.4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333	344	322	437	314	-1.5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501	878	2	30	219	-2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	-	58	18	-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4,147	4,173	6,992	7,881	8,504	12.6

주) 2016년, 2020년, 2022년은 추경예산 기준, 그 외는 본예산 기준

자료: 소방청. 각 연도「소방청 통계연보」

####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운영

- 시·도 및 창원시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및 소방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2021년부터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소방분야 재정을 운용함
-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자치단체별 소방예산의 세입과 세출항목의 불일치, 지역별 소방재정 및 소방서비스의 편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소방회계법」 제정으로 설치됨
- 창원시의 경우 창원시 통합 당시 자율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소방본부를 두어 소방기능을 수행
-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되며, 각 계정마다 세입과 세출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 법적으로 소방특별회계의 핵심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이며,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활용됨. 다만 현실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체 예산의 60%를 상회함

【표 2-12】 소방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구조

계정	세입	세출
인건비 (소방 회계법 제5조)	① 소방안전교부세(담배분 개별소비세 25%)	- 소방공무원 인건비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특별·광역시, 경기, 세종: 30% 미만 - 대전, 광주: 10%	
	③ 일반회계 전입금 -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에서 ①과 ②를 제외한 금액	
소방 정책 사업비 (소방 회계법 제6조)	① 소방안전교부세(담배분 개별소비세 20%) 중 소방분야 금액	- 소방사무 수행경비 - 소방시설 확충경비 - 회계 설치목적에 부합 하여 시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특별·광역시, 경기, 세종: 70% 이상 - 대전, 광주: 90% 이상 - 도(경기 제외): 100%	
	③ 일반회계 전입금 - 특별·광역시, 경기, 세종: 자율 책정 - 대전, 광주: 90% 이상 - 도(경기 제외): 보통세의 0.5% 이상	
	④ 국고보조금,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응급의료기금) 전입금	
	⑤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⑥ 각종 수수료 수입	
	⑦ 그 밖의 수입금	

주)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 편성이 가능하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이입

자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4조~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주요 세입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원은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표적이며, 특정재원은 소방재정에만 활용하도록 하는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응급의료기금 등으로 이루어짐(손희준, 2015, 이영웅 외, 2024)

【표 2-13】 지방자치단체 소방재정 주요 세입

(단위: 억원, %)

구분	세원	내용
일반재원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일반회계 세입에서 일부를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함
특정재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소방분야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및 선박 등 소방시설의 수혜대상에 대해 과세하며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과함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재원 확충을 위해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마련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으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시설 확충 등에 사용함
	국고보조금	소방분야 시설 확충 등 특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고 보조사업의 재원

- 일반재원은 재원 사용의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소방재정에서는 일반재원으로 활용됨
- 일반회계 전입금은 소방재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으로 확보한 세원에서 일부를 소방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재원임
-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재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재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므로, 인건비는 재정여건 악화에도 보전될 수 있으나, 정책사업비 등에 활용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편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소방재정의 특정재원은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활용하도록 마련된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으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지방세법 제14조」)

-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부터 과거의 지역개발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설치되었으며, 현재에도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과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방분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이주현, 2024)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수혜대상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은 건축물 및 선박임. 특히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2배(0.08%~0.24%)하며,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3배 중과(0.12%~0.36%)함
-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1973년 설정된 과세표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인 체차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조세기능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특히 재산세 징수 시 함께 징수됨에도 불구하고 타 세목과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달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과세대상 확대 논의가 필요함(이영웅 외, 2024)

【표 2-14】 지역자원시설세 운영 개요

(단위: 억원, %)

구분	과세대상	세율	세율조정범위
특정자원분	발전용수	10㎡당 2원	50%가감 조정
	지하수	먹는 물: 200원/㎡, 목욕용 100원/㎡, 기타 20원/㎡	50%가감 조정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격의 0.5%	50%가감 조정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 TEU당 1만 5천원	50%가감 조정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6원	-
소방분	건축물 또는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li> <li>•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li> <li>•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li> <li>•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li> <li>•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li> <li>•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li> </ul>	

주) 소방분 과세표준 관련 건축물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70%),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 비율(60%, 43~45%), 선박은 시가표준액 적용  
 자료: 이주현,(2024)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및 장비의 확충, 안전관리의 강화 등을 위해 2015년부터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5%(현재는 45%)를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중 가장 큰 규모를 지님
-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장비 및 시설의 확충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거나 2020년부터 소방공무원 충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위해 재원규모를 확대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에도 사용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정부부처에서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교부되므로 사업목적에 부합하여 재원사용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분담비율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결정하고 있음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소방분야의 보조 사업은 119구조장비 확충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율은 50%로 설정되며, 그 외의 국고보조사업은 기재부장관이 매년 정함

**| 표 2-15 | 소방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단위: 억원, %)

사업명	보조율
119구조장비 확충	50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사업수행의 근거·법령·성격에 따라 정률 (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자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2. 소방안전교부세의 기능

### □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 및 특징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의 확충, 안전관리의 강화 등을 위해 2015년부터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설치 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운영됨
-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 안전세를 도입하기로 국회에서 합의한 후 제도 마련(한재명 외, 2023:33)
- 담배가 주요 화재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담배분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함(한재명, 외, 2023:33)

-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일반 궤련형 담배 기준으로 담배 소매가격에서 594원을 차지하여 1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5년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담배에서는 부가가치세만 국세 및 부담금만 국세에 포함되었으나, 개별소비세 신설 이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가 국세로 포함됨
-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담배를 통한 국세가 일부 지방으로 다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남

【표 2-16】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단위: 원, %)

구분	담배 관련 각종 국세 및 지방세, 준조세							제세 부담금	소매 가격	세율
	국세		지방세		준조세(부담금)					
	개별 소비세	부가 가치세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건강 증진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연초 생산 안정화 기금			
일반 궤련	594	409	1,007	443	841	24	5	3,223	4,500	73.8
궤련형 전자담배	529	409	897	395	750	24	-	3,004	4,500	66.8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0.7mg)	259	409	440	193	368	-	-	1,669	4,500	37.2

자료: 김지수(2024)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 일정한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공통점을 지니나 소방 및 안전시설의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원으로 다른 교부세와 차이를 지님

**| 표 2-17 | 소방안전교부세의 성격**

성격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지방공유의 고유자원	○	○	○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 보완	○	○	○
지방의 일반재원	○	×	△
	사용용도가 자치단체의 자율	조건지정 또는 용도제한	목적에 맞게 사용 (조건지정 및 용도 제한 불가)

자료: 김흥환(2018)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는 소방·안전시설 투자소요 40%, 재난예방 및 안전 강화 노력 40%, 그리고 재정여건 20%를 적용하여 배분되고 있음
- 2023년부터 적용되는 세부 교부기준부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방안전 교부세 적정 사용률, 재정자주도를 제외한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반영 비율이 소방분야의 비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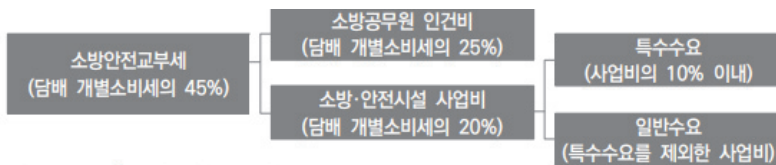
**| 표 2-18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

구분	소방분야	비율	안전분야	비율
소방·안전 시설 투자소요 (40%)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금액	12%	지방도로 지수	6%
	화재위험 지수	3%	지방하천 지수	4%
	소방출동 지수	2%	안전소요 지수	2%
	소방청사 개선소요 지수	5%	안전사고 지수	2%
	소방공무원 수	4%		
노력도 (40%)	소방재정 확대 노력지수	13%	안전시설 확충노력 지수	4%
	소방정책 수행 노력지수	2%	재난안전 전담 공무원 수	1%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지수	3%	안전소요 지수 개선 지수	1%
			안전투자 확보 지수	2%
	화재예방 지수	3%	안전신고 개선 지수	1%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8%, 예산집행 노력 지수 2%				
재정여건 (20%)	재정자주도 20%			

## □ 소방안전교부세의 기능

- 소방안전교부세는 크게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로 수행되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와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5%로 수행되는 인건비 지원에 사용됨

|그림 2-1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구분



자료: 한재명 외(2023)

-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중 75% 이상을 201년부터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노후장비 교체 및 부족장비 보강 등을 위해 당초에는 2017년까지 소방분야에 사업비의 일정률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 「지방교부세법」개정을 통해 해당 배분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 75%의 배분비율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 향후 3년간 소방분야에 사용 가능한 금액을 추정하여 노후·부족 장비 교체 보강에 소요되는 경비(7,600억원)에 가장 가까운 비율로 결정함(한재명 외, 2023:35)
-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일반수요와 특수수요로 구분되며, 일반수요는 소방·안전 분야별로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정됨
- 중점사업은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소방장비 포함)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사업을 의미함
- 재량사업은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사업을 의미함
- 특수수요는 일반수요 외에 발생하는 대규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비 교부액의 10% 이내에서 지정하여 지원함

○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은 매년 지자체와 협의·지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중점사업 10개분야, 재량사업 7개 분야 사업으로 구성됨

**표 2-19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구분**

유형	부문	대상 사업	대상사업의 범위
중점 사업 (10)	소방 시설 확충 (8)	기동장비 교체·보강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기동장비의 구입
		보호장비 교체·보강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보호장비의 구입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5조에 따른 호흡보호장비 충전실 및 정비실의 구축보강
		정보통신 장비 교체·보강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장비의 구입
		구조장비 교체·보강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조장비의 구입(단, 구조장비 중 소모품 제외)
		구급장비 교체·보강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급장비의 구입(단, 구급장비 중 소모품 제외)
		화재진압 장비 교체·보강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화재진압장비 구입(단, 화재진압 장비 중 소모품 제외)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중 비상소화장비 설치
		측정장비 교체·보강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측정장비의 구입(단, 측정장비 중 소모품 제외)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화재조사 전담 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의 구입
		보조장비 교체·보강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보조장비의 구입(단, 구급장비 중 소모품 제외)
	소방안전 관리 강화 (2)	소방출동 로 확보	▶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소방대가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신호등 및 신호제어기 포함)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설치
		소방관서 보건 안전관리 강화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심신보건을 위한 시설·장비의 구축, 보건안전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동 규정 제24조에 따른 유해물질 차단시설 구축 ▶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른 매연배출시스템 설치
재량 사업 (7)	소방시설 확충 (4)	소방교육 기관시설· 장비 보강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6조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 어야 하는 시설 구축 및 장비의 구입(‘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기준’ 참조)

유형	부문	대상 사업	대상사업의 범위
		노후 소방 관서 개선	▶ 「소방기본법」 제3조의 소방기관의 청사 중 노후소방관서 개선 사업(부지매입비 제외)
		긴급구조 시스템 및 장비 확충·보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재난관리에 필요한 장비·전산시설의 확충 및 긴급구조기관에 설치하는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및 교체
		긴급구조 통제단 장비 확충· 보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 및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현장지휘소의 시설 구축 및 장비의 구입
소방안전 관리 강화 (3)	재난대응 역량강화 소방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훈련 중 관계기관 합동훈련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소방훈련	
	소방안전 교육·훈련	▶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대원 교육·훈련 및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훈련·홍보를 위한 시설 구축 및 장비의 구입 ▶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른 소방체험관의 체험시설 구축 및 콘텐츠 구현	
	소방장비 의 세척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6조에 따른 외부 전문업체에 세척 의뢰	

- 한편 2020년 소방직의 국가직화와 연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인건비 지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직의 인건비 보전에도 사용됨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인상하고, 인상분 25%에 대해서는 인건비 충당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
- 세월호 사고, 강원도 대형산불 등 대형재난 발생을 계기로 소방청을 개칭 하였으며, 부족한 소방인력의 확충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소방 인력 단계적 충원계획(2022년까지 2만명)’에 따른 충원인력의 인건비 부족을 소방교부세로 충당하기로 함(김성주 외, 2020:4; 김홍환 외, 2022:64)
- 문재인정부 1단계 재정분권에서 소방 충원인력 인건비 보전을 위해 담배분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45%로 인상함

**제3절**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중앙·지방 간 자원분담 논의**

**1.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자원분담의 쟁점**

□ **자치사무로서 소방사무에 대한 지방의 재정책임**

- 「지방자치법」상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해당 사무에 대한 비용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함
  - 소방사무는 법률에 의해 수행의무가 부과되는 의무적 자치사무로(김재호 외, 2019:275), 「지방자치법」에서는 시·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음
  -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라는 주장의 근거로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은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함

**| 표 2-20 |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 등의 지휘관련 규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사무에 충당할 자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로 지역자원 시설세를 두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공동시설세’라는 명칭으로 1961년 설치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역개발세와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됨
- 기존 소방공동시설세는 원활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기관 신·개축 및 유지보수, 소방차량 및 장비구입, 소방용수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로 설치됨(김흥환 외, 2022:37)

- 이러한 자치사무의 특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주체의 결정**

-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2020년부터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의 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공무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시·도지사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은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받은 권한이며, 소방공무원의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함

**| 표 2-21 |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개정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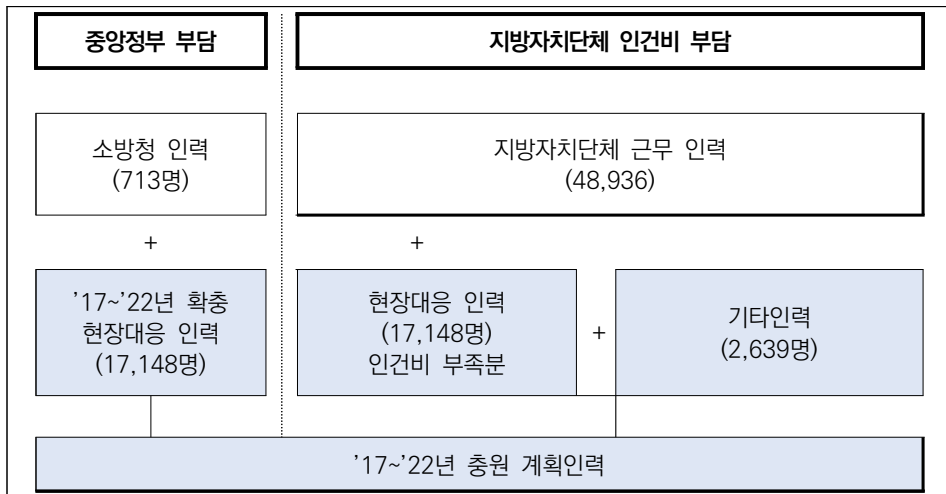
법률명	주요 내용
「소방공무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3조)</li> <li>• 대통령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근거 마련 (6조) ⇒ (대통령령) 시도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본부장·학교장 제외)</li> <li>• 신규채용, 승진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근거 마련 (11조)</li> <li>• 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적용 (24조)</li> <li>•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 (26조)</li> <li>• 고충심사 중 재심 및 소방령 이상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27조)</li> </ul> ※ 시행일: 2020.4.1.
「지방공무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무원의 종류 중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 (2조)</li> </ul> ※ 시행일: 2020.4.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 삭제 (2조) ⇒ 「소방기본법」에서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두는 근거 신설</li> </ul> ※ 시행일: 2020.4.1.

- 기존 소방직 공무원 외에 소방공무원의 법정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 신규로 충원하는 2만명의 공무원은 국가적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하였고(이원희 외, 2020:25) 이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충당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를 보전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구조와 관련하여 소방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에 따라 인건비 부담주체가 다름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중 2017년~2022년 총원된 현장대응 인력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 보전이 이루어지나, 당해연도에 총원된 인력중 현장대응인력이 아닌 인력, 그리고 이후 총원된 인력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구조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부담 재원을 중앙정부에 전출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함(김성주 외, 2020:15)

| 그림 2-2 | 지방자치단체 소방 세출 규모 및 비중

(단위: 억원, %)



주) 최종예산 기준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의 인건비 부담은 자치경찰에 대한 인건비를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 것과는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자치경찰은 국가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중앙정부는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사무수행에 대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양사무로 인식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취함
  - 지방교육과 관련하여 교사 또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기준재정수요를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인건비에 대한 재정책임 수준이 높음

□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보전의 불충분성

- 소방공무원의 법정 필수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약 2만명 규모의 소방공무원 충원이 이루어졌으며 당초 계획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가 보전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담배분 개별소비세 비율을 45%로 인상함
- 2017년 기준 소방공무원 중 법정기준 대비 현장인력의 부족인원은 19,871명으로 부족률은 33.7%였으며, 2022년까지 단계적 충원 시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됨(이원희 외, 2020:32)

【 표 2-22 】 2020년 당시 소방 공무원(현장인력) 충원 실적 및 계획

(단위: 명)

구분	계	충원실적(12,326명)				충원계획(7,545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9,871	1,500	3,404	3,755	3,667	3,642	3,903
서울	721	30	53	-	118	164	356
부산	652	68	121	164	124	87	88
대구	492	39	142	101	82	73	55
인천	662	29	144	146	135	114	94
광주	259	35	62	50	47	41	24
대전	250	16	108	61	24	19	22

구분	계	충원실적(12,326명)				충원계획(7,545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울산	512	26	61	99	102	108	116
세종	237	23	47	50	50	35	32
경기	2,992	399	522	524	507	514	526
강원	1,739	147	286	316	318	337	335
충북	1,203	90	213	208	214	210	268
충남	1,898	94	293	342	379	377	413
전북	1,257	46	251	255	204	203	298
전남	2,192	109	314	442	444	441	442
경북	2,253	95	478	428	434	424	394
경남	1,666	145	226	321	320	330	324
제주	492	66	9	170	87	84	76
창원	394	43	74	78	78	81	40

자료: 소방청 내부자료(2020); 이원희 외(2020:29) 재인용

- 당시 소방 인력 인건비는 1인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충원된 약 2만 명의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보전한다는 전제에서는 해당 인력의 승진, 기본급에 대한 보수인상률, 호봉 승급, 기타 수당 인상 등이 반영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이 감소함
- 특히 소방안전교부세의 세입인 담배분 개별소비세와 관련하여 성인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담배분 개별소비세 또한 감소하거나 정제될 수 있어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의 보전은 불합리할 수 있음 (김홍환 외, 2022:66)

【표 2-23】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변화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3
담배분 개별소비세	18,297	17,228	19,719	19,964	19,664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 2.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재원확보 관련 선행연구 검토

### □ 소방공무원 인건비 관련 선행연구

-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관련된 연구는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된 연구에 비해 연구관심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선행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인력 충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추정과 이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함
  -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이원희 외(2020), 김성주 외(2020), 김흥환 외(2022) 등이 있음
- 이원희 외(2020)는 2만명 인력 충원에 대해 소방사 3호봉 기준으로 연도별 인건비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함.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인상,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중앙정부의 기금의 공동 활용, 소방발전기금의 설치 등을 제안함
  - 2만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22년까지 19,871명 충원 시 2023년에 부담할 인건비는 11,227억원으로 추산됨
  - 개선방안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65%로 인상하고 전액을 소방 인건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사업비는 지역자원시설세,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재원으로서의 대체 등의 방안을 제안함
  - 아울러 기존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보통교부세 중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를 소방인건비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함
- 김성주 외(2020)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서울시의 재원확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장기추계 등을 통해 재원을 분석하고 재원확충방안을 제시함. 대안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시함
  -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규모 내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가능인원을 분석 하였으며 이 때 소방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전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평균을

기준으로 83,985천원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소방공무원 초임(소방사 및 소방위 3호봉 기준 평균) 기준 연봉을 41,345천원으로 제시하여 분석함  
 - 소방공무원 인건비 충당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함

- 김흥환 외(2022)는 소방인력 확충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수요를 평균 소방관 보수를 산정하여 추정함. 재정 확충방안으로 담배분 개별소비세 개선, 지방소방목적세 확대 신설 등을 재정격차 유발수준, 이론 부합성, 정치적 수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
  - 소방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추정은 인력충원에 따른 연도별 재정수요 증가분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최초 인건비는 기획재정부 및 소방청에서 제시한 5,000만원으로 설정함. 이후 임금인상률, 호봉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연차별 인건비를 추정함
  - 소방인건비 충당을 위해 담배분 개별소비세액 전액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소방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 후 이에 상응한 재정을 보전하는 방식을 제안함

【표 2-24】 소방공무원 인건비 관련 주요 선행연구

구분	인건비 추정 방식	재원마련 방안
이원희 외(2020)	• 1인당 인건비 5,600만원 기준으로 계산	• 담배분 개별소비세 인상 • 소방안전교부세 정액 인건비 사용, 타 기금 재원으로 사업비 충당
김성주 외(2001)	• 전체 소방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 83,985천원 • 소방공무원 초임 41,345천원으로 계산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김흥환 외(2020)	• 소방공무원 초임 5천만원으로 계산 후, 물가상승률, 호봉인상 소요연수 등 고려하여 연차별 인건비 계산	• 담배분 개별소비세 전액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 □ 소방재원 확충 방안 관련 선행연구

- 소방재원 확충과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또는 지방소방세 전환(김흥환 외, 2018 등),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김찬동, 2005, 라휘문, 2010 등) 또는 세율개편(김성묵, 2008 등), 소방 관련 부담금 신설(김동완, 2007 등), 부가세로 지방소방세 도입(임상빈 외, 2019 등) 등이 제시되었음
- 이 외에도 소방안전교부세의 개선을 통해 소방분야로의 소방재원 확보를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음(장중돈 외, 2018, 정창훈 외, 2017 등)
- 장중돈 외(2018)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안전 분야 투자사업 대부분이 같은 분야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을 제기하고,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교부세 전액을 소방분야에 투입할 것을 제안함
- 정창훈 외(2017)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전액을 포괄적 용도로 소방에만 투자하고 지방세인 소방세로 전환하거나 소방교부세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시함

【표 2-25】 선행연구의 소방재원 확충 방안

구분	인건비 추정 방식	주요 선행연구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또는 지방소방세 전환	담배분 개별소비세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김흥환 외(2018)
	지방소방세 전환	시도지사협의회(2022), 충청북도(202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유류, 전기, 가스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등	김진동(2005), 라휘문(2009), 송상훈(2008), 이정만(2007), 라휘문 외(2010), 송상훈 외(2012)
	차량, 항공기, 녹지 등	김진동(2006), 송상훈(2008)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개편	세율인상 및 단일세율제 도입	김대영 외(1998), 이원희(1999), 김상묵(2008)
소방 관련 부담금	담배, 화재보험, 에너지원 등 대체 부과	라휘문(2010)
	부담금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김동완(2007)
부가세로 지방소방세 도입	지방세목 중 7개 세목 소방 관련 부가세 신설	임상빈 외(2019)

자료: 박상수 외(2012), 김흥환 외(2022)

## 제 3 장

---

# 지방 소방분야 재정 및 소방안전교부세 현황 분석

제1절 지방 소방분야 재정 현황

제2절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현황



# 지방 소방분야 재정 및 소방안전교부세 현황 분석

## 제1절

## 지방 소방분야 재정 현황

### 1. 지방자치단체 소방특별회계 재정 규모

####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분야 재정 규모

- 소방분야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체 재정규모는 2023년 기준 약 8.0조원이며, 2016년 4.5조원에서 연평균 8.9%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6.8조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소방재원의 74.1%를 차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사무 수행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표 3-1 | 지방자치단체 소방 세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전체 규모(C=A+B)	44,646	52,430	59,655	74,466	80,390	8.9
중앙정부 소계(A)	5,355	5,038	8,143	10,486	11,986	10.6
소방청	1,208	1,688	2,011	2,553	3,088	14.3
기타 중앙정부 재원	4,147	3,350	6,132	7,933	8,898	9.6
지방자치단체(B)	39,291	47,392	51,512	63,980	68,404	8.6
지방자치단체 재원 비중(B/C)	78.58	82.47	75.98	75.31	74.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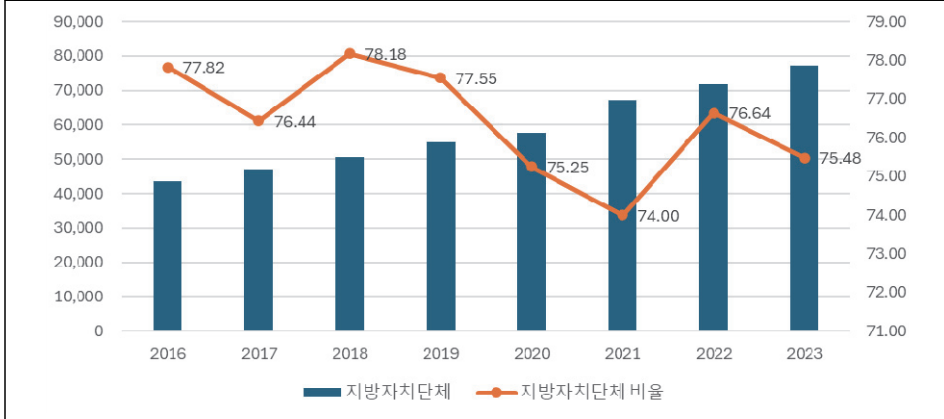
주 1) 추경이 있는 회계연도는 추경예산 사용

2) 소방안전교부세는 기타 중앙정부재원에 포함함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그림 3-1 | 지방자치단체 소방 세출 규모 및 비중

(단위: 억원, %)



주) 최종예산 기준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 시·도별 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별 소방분야에 대한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경기도 1.3조원, 서울 1.0조원, 경북 0.7조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2016~2023년간 재정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12.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12.2%), 세종특별자치시(11.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방분야 재정규모가 크고, 소방분야의 재정지출 증가폭이 큰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에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인천광역시의 소방분야 재정규모는 2023년 기준 0.4조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재정규모가 큰 편은 아니나, 연평균 증가율이 11.1%로 나타나고 있어 소방재정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표 3-2 | 지방자치단체 소방분야 재정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서울	7,217	8,282	8,569	9,460	9,773	4.4
부산	2,513	2,881	3,237	4,058	4,335	8.1
대구	1,911	2,487	2,667	3,282	3,649	9.7
인천	2,094	2,630	2,970	3,907	4,382	11.1
광주	1,134	1,454	1,795	1,994	2,058	8.9
대전	1,118	1,578	1,744	1,939	2,046	9.0
울산	1,000	1,359	1,339	1,631	1,861	9.3
세종	322	386	456	616	695	11.6
경기	9,284	9,828	10,433	12,338	13,323	5.3
강원	2,452	2,839	3,333	4,289	4,674	9.7
충북	1,542	1,807	2,142	2,936	3,239	11.2
충남	2,336	2,647	3,226	4,400	4,622	10.2
전북	1,794	2,032	2,587	3,506	3,603	10.5
전남	2,075	2,454	3,143	4,229	4,653	12.2
경북	2,919	3,445	4,554	6,167	6,682	12.6
경남	2,261	2,733	3,271	4,472	4,856	11.5
제주	832	1,007	995	1,409	1,525	9.0
창원	632	894	1,186	1,269	1,326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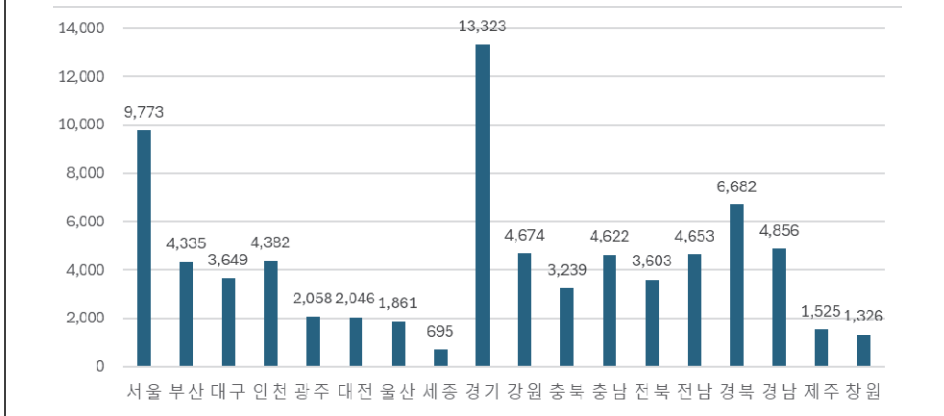
주 1) 최종예산 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그림 3-2 | 2023년 자치단체별 소방 세출 규모

(단위: 억원)



주) 최종예산 기준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2. 지방자치단체 소방특별회계 세입

### □ 자원별 세입 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비중이 63.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21.0%), 소방안전교부세(11.5%) 순으로 나타남
- 소방사무의 상당수가 중앙정부 사무이거나 혹은 공동 사무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방분야의 세입 중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장률이 높지 않아, 향후 소방사무에 대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방안전교부세는 2019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높으나 이는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규모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며,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 표 3-3 】 지방자치단체 소방분야 재정 세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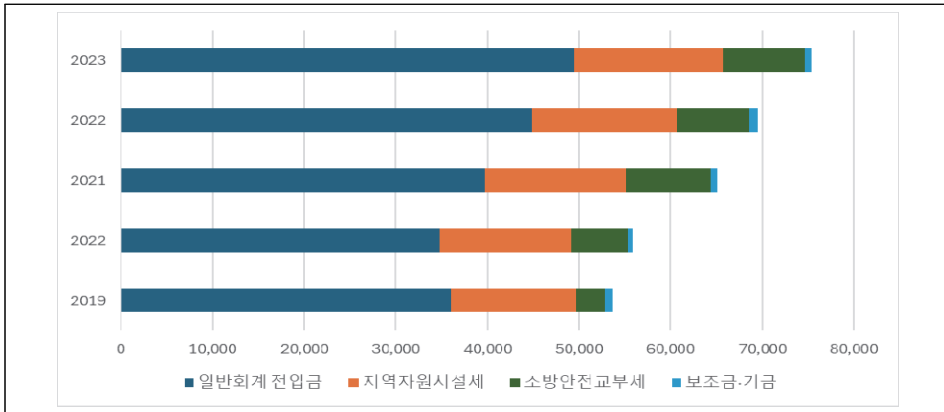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합계	55,066	57,645	66,893	71,913	77,302	8.8
일반회계 전입금	36,044	34,819	39,713	44,842	49,458	8.2
지역자원시설세	13,685	14,346	15,382	15,858	16,266	4.4
소방안전교부세	3,059	6,132	9,268	7,933	8,898	30.6
보조금·기금	794	510	679	888	722	-2.3

주) 소방청 통계연보와 본예산 추경 반영 등의 차이로 값이 다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소방청 내부자료(2024)

【 그림 3-3 】 지방자치단체 소방분야 재정 세입구조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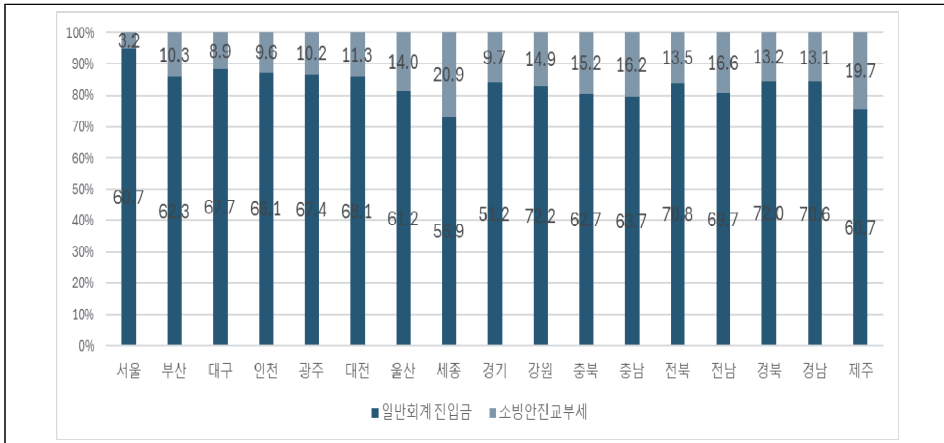
주) 최종예산 기준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 일반회계 전입금

- 2023년 기준으로 시도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살펴보면 평균 64.9%로 나타나며 최저51.2%(경기)에서 최고 72.2%(강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여건이 양호한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지방의 소방분야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역 간 세입 편차가 크게 나타나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한 지역간 소방력 저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전국적인 소방서비스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원이 보다 증대될 필요가 있음
- 인천은 소방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6.1%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그림 3-4 | 2023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출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비율

(단위: 억원)



자료: 시도별 취합자료(인천광역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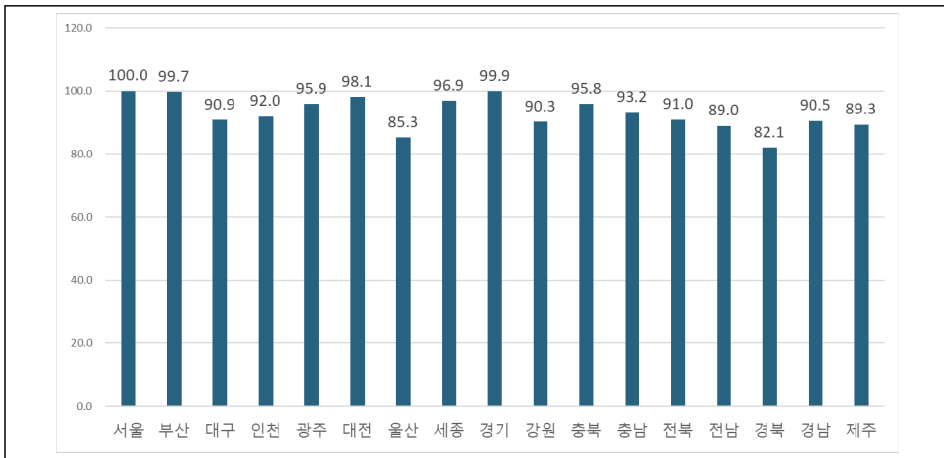
- 소방특별회계로의 일반회계 전출금 중 인건비 비율은 2023년 기준 92.9%로 최고 100%(서울)에서 최저 82.1%(경북)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일반회계 전출금의 대부분이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을 통한 정책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임

- 소방장비의 구입,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의 비용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업비,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장비 및 시설 비용 등에는 인건비 사용이 거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됨
- 인천광역시의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중 인건비 비중이 92.0%로 타 지자체 대비 낮은 수준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의 많은 재원이 인건비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서울은 일반회계 전출금 전부가 인건비에만 사용되고 있음

**|그림 3-5| 2023년 일반회계 전출금 중 인건비 비중**

(단위: 억원)



자료: 시도별 취합자료(인천광역시 제공)

- 일반회계 전출금과 관련하여 자주재원의 규모를 고려할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율이 자주재원 증가율을 상회하여 향후 소방재정 지원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타 분야 지출에 압박 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진 2020년 이후에도 자주재원 대비 인건비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이 추세는 2023년에 다시 증가함

- 자주재원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가용 재원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 대비 소방재원을 위한 전출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재정여건을 고려할 경우에 소방공무원의 충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

【 표 3-4 】 지방자치단체 소방분야 재정 세입구조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회계 전입금(a)	36,044	34,819	39,713	44,842	49,458	8.2
자주재원(b)	572,034	499,670	582,810	809,616	676,552	4.3
자주재원 비율(a/b)	6.3	7.0	6.8	5.5	7.3	-

주) 자주재원은 재정자주도를 측정 시 사용하는 지방교부세와 자체세입의 합을 의미하며, 자주재원은 결산 기준을 활용

자료: 소방청 내부자료(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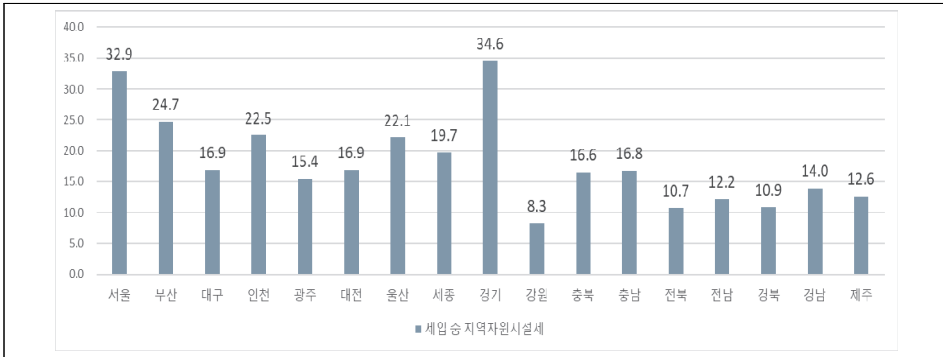
###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자치단체별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18.1%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지역별로는 최고 34.6%(경기)에서 최저 8.3%(강원)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분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원의 세입 여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마다 세원 분포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향후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경우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따른 형평성 저해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한 지역간 재정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재원 확보 시 특정 지역에 세원 확충 효과가 집중될 수 있으며 경북, 전남, 광주 등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에서의 비중이 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확충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5%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한 세입 확충 시 세입확충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6 | 2023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출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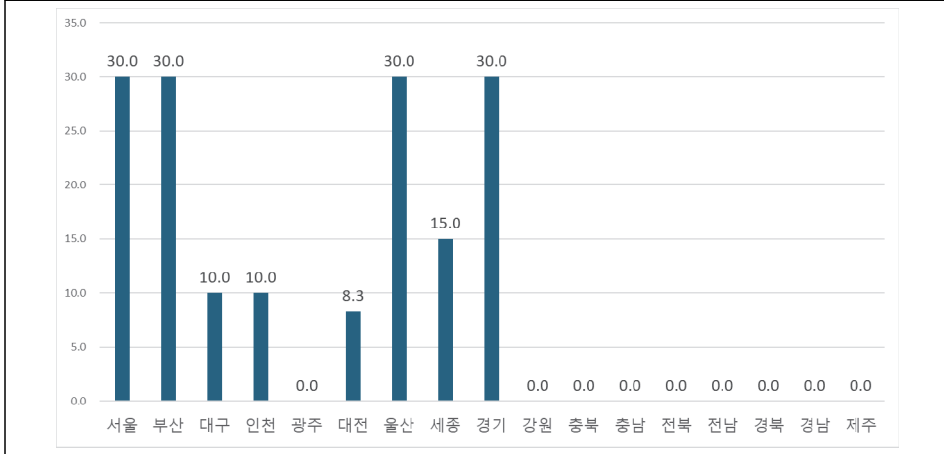


자료: 시도별 취합자료(인천광역시 제공)

- 2023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인건비 사용 비중은 평균 9.6%로 최고 30.0%(서울, 부산, 울산, 경기), 최저 0%(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일반회계 전출금과 달리 지역자원시설세는 대부분의 재원이 정책사업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출금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시 중심으로 인건비 사용 비중이 높고, 도 지역에서는 대부분 사업비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다만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광역시가 도 지역에 비해 지역자원시설세 규모가 크므로 도 지역에서는 인건비에 투입할 재원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인천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를 인건비에 사용하고 있으며,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됨

[그림 3-7]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 중 인건비 비중

(단위: %)



자료: 시도별 취합자료(인천광역시 제공)

### 3. 지방자치단체 소방특별회계 세출

#### □ 기능별 지출

-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비,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구분하면 2023년 기준으로 행정운영경비가 75.2%(5.8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개선, 정책 추진 등에 대한 자원 투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판단됨
- 행정운영경비는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인력운영비, 경상경비 성격을 갖는 기본경비로 구성됨
- 행정운영경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다른 지출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이는 법정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소방직 공무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3-5】 특성별 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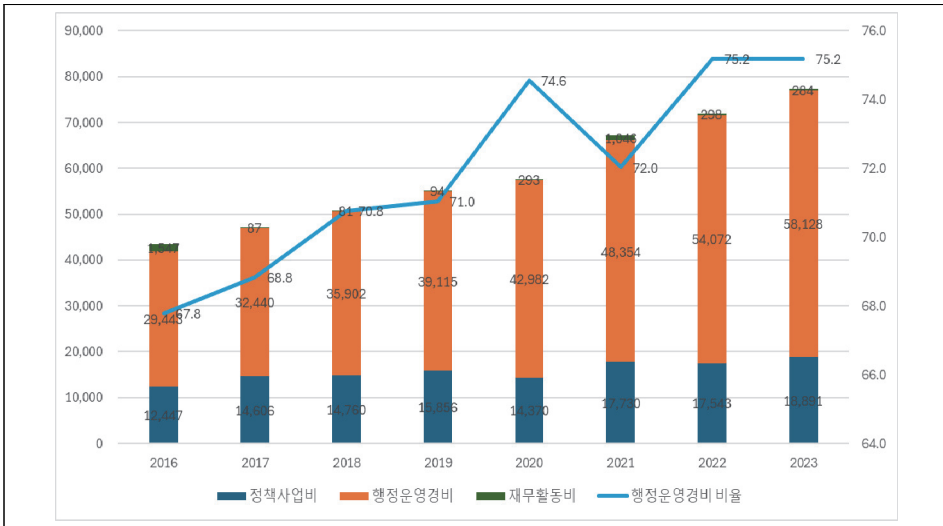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전체 규모(D=A+B+C)	43,438	50,742	57,644	71,913	77,302	8.6
정책사업비(A)	12,447	14,760	14,370	17,730	18,891	6.1
행정운영경비(B)	29,443	35,902	42,982	48,354	58,128	10.2
재무활동비(C)	1,547	81	293	298	284	-21.5
행정운영경비 비율(B/D)	67.8	70.8	74.6	75.2	75.2	-

주 1) 추경이 있는 회계연도는 추경예산 사용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그림 3-8】 분야별 세출 규모 및 행정운영경비 비율

(단위: 억원, %)



주) 최종예산 기준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행정운영경비

-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96.5%로 대부분의 행정운영경비는 소방공무원 등의 인건비가 차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경비 비중은 2023년 기준 3.5%에 불과하며, 기본경비의 비중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인력운영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4%로 소방 공무원의 대규모 증원 이후 해당 인력들의 승진, 보수 인상 등에 따라 인력운영비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6】 행정운영경비 항목별 규모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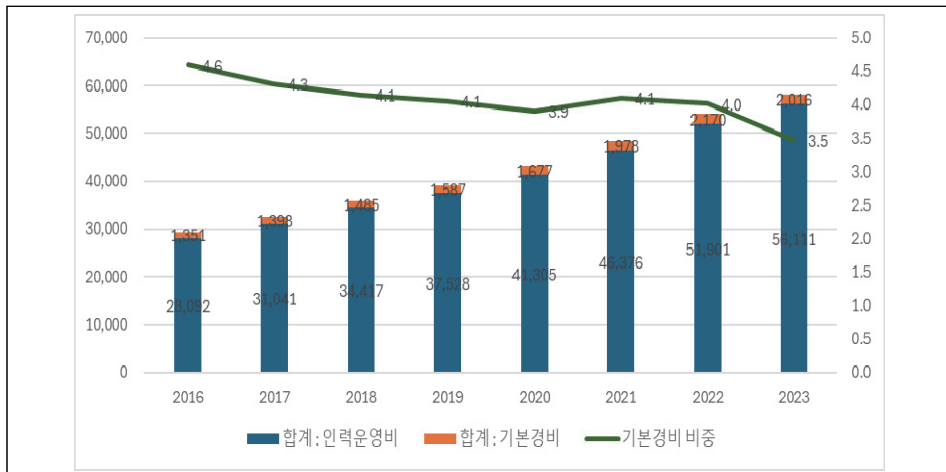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행정운영경비(C=A+B)	29,443	35,902	42,982	48,354	58,128	10.2
인력운영비(A)	28,092	34,417	41,305	51,901	56,111	10.4
기본경비(B)	1,351	1,485	1,677	2,170	2,016	5.9
기본경비 비율(B/C)	4.6	4.1	3.9	4.0	3.5	-

주 1) 추경이 있는 회계연도는 추경예산 사용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그림 3-9】 분야별 세출 규모 및 행정운영경비 비율

(단위: 억원, %)



주) 최종예산 기준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자치단체별 기능별 지출

- 자치단체별로 기능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최저 67.0%(울산광역시)에서 최고 78.0%(부산광역시)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수가 많은 자치단체가 행정운영경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인천광역시의 경우 행정운영경비비율이 2016년 77.5%에서 2023년 71.5%로 감소하여 타 지자체의 행정운영경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표 3-7 | 자치단체별 기능별 지출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					2023년				
	합계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비율	합계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비율
서울	7,217	1,871	5,345	1	74.1	9,773	2,168	7,603	2	77.8
부산	2,513	651	1,804	58	71.8	4,335	951	3,384	0	78.0
대구	1,911	520	1,391	1	72.8	3,649	991	2,651	6	72.7
인천	2,094	440	1,622	32	77.5	4,382	1,246	3,133	3	71.5
광주	1,134	365	766	3	67.6	2,058	550	1,505	3	73.1
대전	1,118	300	814	4	72.8	2,046	503	1,538	4	75.2
울산	1,000	400	599	1	59.9	1,861	580	1,247	33	67.0
세종	322	152	170	0	52.7	695	196	499	0	71.8
경기	9,284	2,169	5,708	1,407	61.5	13,323	2,957	10,238	128	76.8
강원	2,452	923	1,529	0	62.4	4,674	1,063	3,609	1	77.2
충북	1,542	488	1,018	36	66.0	3,239	862	2,374	3	73.3
충남	2,336	880	1,455	1	62.3	4,622	1,212	3,409	1	73.8
전북	1,794	571	1,222	1	68.1	3,603	822	2,781	0	77.2
전남	2,075	585	1,489	1	71.7	4,653	946	3,706	1	79.6
경북	2,919	896	2,023	1	69.3	6,682	1,947	4,734	1	70.8
경남	2,261	715	1,545	0	68.4	4,856	1,109	3,747	0	77.2
제주	832	386	445	1	53.5	1,525	424	1,062	39	69.6
창원	632	135	497	0	78.6	1,326	362	907	58	68.4

주) 최종예산 기준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자치단체별 행정운영경비

- 자치단체별로 행정운영경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저 1.3%(대전광역시)에서 최대 6.0(경기도)로 분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8%에서 2023년 3.6%로 감소함

【표 3-8】 자치단체별 행정운영경비 지출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				2023년			
	합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기본경비 비율	합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기본경비 비율
서울	5,345	5,121	224	4.2	7,603	7,327	276	3.6
부산	1,804	1,730	75	4.1	3,384	3,318	66	1.9
대구	1,391	1,330	61	4.4	2,651	2,581	70	2.7
인천	1,622	1,543	78	4.8	3,133	3,020	113	3.6
광주	766	750	16	2.1	1,505	1,482	24	1.6
대전	814	800	15	1.8	1,538	1,517	21	1.3
울산	599	585	14	2.3	1,247	1,230	17	1.4
세종	170	161	9	5.5	499	481	18	3.5
경기	5,708	5,309	399	7.0	10,238	9,619	619	6.0
강원	1,529	1,487	43	2.8	3,609	3,550	59	1.6
충북	1,018	984	34	3.3	2,374	2,327	47	2.0
충남	1,455	1,394	61	4.2	3,409	3,317	91	2.7
전북	1,222	1,201	21	1.7	2,781	2,742	39	1.4
전남	1,489	1,376	113	7.6	3,706	3,485	220	5.9
경북	2,023	1,948	75	3.7	4,734	4,565	169	3.6
경남	1,545	1,472	74	4.8	3,747	3,627	120	3.2
제주	445	431	14	3.1	1,062	1,044	19	1.8
창원	497	472	26	5.1	907	878	29	3.2

주) 최종예산 기준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 자치단체별 정책사업비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중 국고보조사업 및 소방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국비사업 비중은 2023년 기준 평균 28.7%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저 16.4%(서울), 최고 40.9%(인천)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국비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사업 추진 여력이 부족하며, 대응재원 마련 등으로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인천광역시는 전체 사업비 중 국비사업의 비중이 높아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경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여건이 좋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대응재원 마련 등으로 자체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국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비가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6.2%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최저 0.0%(경북)에서 최고 23.2%(인천)로 지역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다만 이는 전체 세출에서 국비사업의 비율과 연관되어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는 세출에서 국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0.7%로 높으나 세출에서 대응재원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나타나며, 반면 인천광역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유사하게 세출 대비 국비사업비 비율이 40.9%이나 세출에서 대응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3.2%로 크게 차이가 나타남
- 추진하는 국비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대응재원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소방분야의 정책사업 분야가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지역 간 대응재원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전체 국비사업비에서 지방대응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1.0%로 대부분의 국비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다만 대응재원비의 지역간 편차를 보면 최저 0.0%에서 최고 56.7%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간 국비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인천광역시의 경우 국비사업 중 지방대응비 비율이 56.7%로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국비사업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표 3-9 | 정책사업비 중 국비사업 및 지방 대응비 비율**

(단위 %)

구분	세출 중 국비사업 비율	세출 중 국비사업 대응비 비율	국비사업비 중 지방대응비 비율
서울	16.4	7.5	45.8
부산	33.0	7.6	23.0
대구	27.6	12.1	43.8
인천	40.9	23.2	56.7
광주	33.2	1.4	4.2
대전	33.1	2.8	8.6
울산	26.2	1.0	3.8
세종	35.7	1.3	3.6
경기	19.0	4.8	25.5
강원	40.7	11.9	29.3
충북	21.3	0.0	0.0
충남	28.6	9.4	32.7
전북	28.6	5.2	18.3
전남	19.5	0.0	0.0
경북	28.4	10.6	37.2
경남	21.3	4.3	20.0
제주	34.2	1.7	5.0
평균	28.7	6.2	21.0

자료: 시도별 취합자료(인천광역시 제공)

#### 4. 지방 소방분야 재정의 문제점

##### □ 세입의 불안정성

○ 세입에 있어 많은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 신장성의 감소,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세입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음

- 2019년부터 2023년의 기간동안 세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8.6%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시설세의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4.4%에 그쳐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 등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방분야의 지출을 충당하는데 향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역간 불균형성이 심해 특정 지역자원시설세의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세원 증가분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의 확충 효과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 부족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 소방분야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좋지 않고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토한 소방재원의 투자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악화되더라도 타 분야 지출에 우선하여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외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비 보급, 소방차 등 주요 대형장비, 소방관서의 시설 개선 및 중축 등에 있어 전출금 지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 □ 인건비에 따른 세출의 경직성 심화

- 소방분야의 지출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75.2%로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경직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경상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고, 2023년 기준 인건비가 행정운영경비의 96.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의 대규모 퇴직으로 인한 급격한 인건비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인건비로 인한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경우 인건비로 인한 경직성은 완화될 수 있으나 국세 및 지방세 여건, 대외경제 여건을 고려할 경우 세입 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통한 재정조정 기능 부족

- 소방재정에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의 규모가 크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 불안정성을 지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 또는 세출의 형평성이 저하될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조정 기능이 부족함
-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의 소방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부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임

**제2절**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현황**

**1.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규모**

□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 소방안전교부세는 2016년 4,147억원에서 2023년 8,898억원으로 연평균 11.5%의 증가세를 보임
- 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2020년부터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임
- 소방안전교부세의 증가율은 높으나 소방안전교부세의 규모가 크지 않아 202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중 11.5%만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함

**| 표 3-10 |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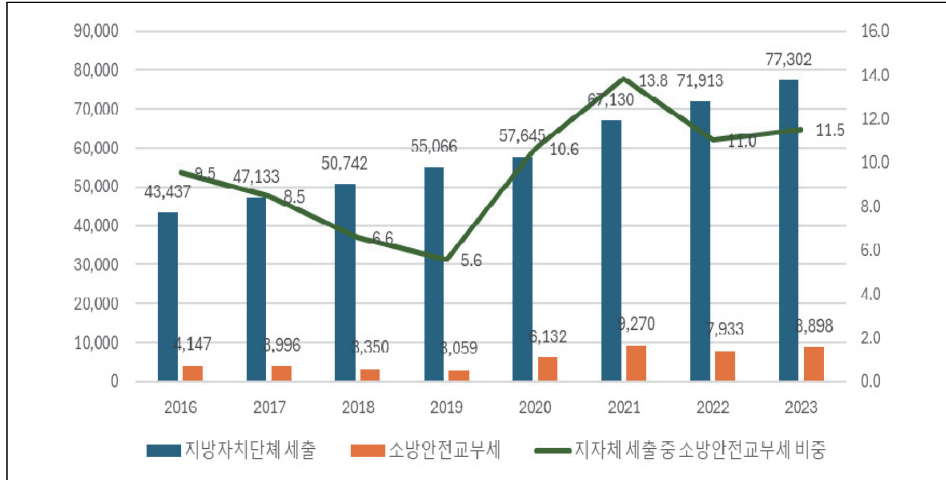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지방자치단체 세출(B)	43,438	50,742	57,644	71,913	77,302	8.6
소방안전교부세(C)	4,147	3,350	6,132	7,933	8,898	11.5
지자체 세출 중 소교세 비중(B/A)	9.5	6.6	10.6	11.0	11.5	

주 1) 추경이 있는 회계연도는 추경예산 사용  
 2)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전예산을 제외한 소방분만 제시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그림 3-10 |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변화

(단위: 억원, %)



주) 최종예산 기준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 자치단체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규모

- 자치단체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규모는 2023년 기준 최저 145억원(세종특별자치시)에서 최고 1,293억원(경기도)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은 2016년 대비 2023년의 교부세 규모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지방자치단체 세출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최저 3.2%(서울특별시)에서 최고 20.9%(세종)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방안전교부세 비중이 2016년 대비 2023년 증가한 자치단체는 많지 않은 실정임
- 인천광역시는 2023년 기준 소방안전교부세를 422억원 교부받았으며, 소방안전교부세가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1.0%에서 2023년 9.6%로 감소함

【표 3-11】 자치단체별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A)	전체 세출(B)	소교세 비율(A/B)	소방안전교부세(A)	전체 세출(B)	소교세 비율(A/B)
서울	292	7,217	4.0	313	9,773	3.2
부산	244	2,513	9.7	445	4,335	10.3
대구	240	1,911	12.6	325	3,649	8.9
인천	230	2,094	11.0	422	4,382	9.6
광주	235	1,134	20.7	218	2,058	10.6
대전	198	1,118	17.7	231	2,046	11.3
울산	204	1,000	20.4	260	1,861	14.0
세종	68	322	21.1	145	695	20.9
경기	349	9,284	3.8	1,293	13,323	9.7
강원	272	2,452	11.1	698	4,674	14.9
충북	237	1,542	15.4	494	3,239	15.2
충남	270	2,336	11.6	749	4,622	16.2
전북	261	1,794	14.6	503	3,603	14.0
전남	271	2,075	13.1	774	4,653	16.6
경북	297	2,919	10.2	885	6,682	13.2
경남	210	2,261	9.3	636	4,856	13.1
제주	213	832	25.6	301	1,525	19.7
창원	55	632	8.7	206	1,326	15.5

주 1) 추경이 있는 회계연도는 추경예산 사용

2)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전예산을 제외한 소방분만 제시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2. 기능별 지원 규모

### □ 사업비 지원 규모

○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사업비 지원규모는 2023년 기준 3,416억원이며, 2016년 4,147억원에서 연평균 2.7% 감소추세를 보임

○ 사업비분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안전시설 및 노후 소방장비 개선 등에 활용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비와 비교할 경우 2023년 기준 18.1% 규모임, 이는 2016년 33.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표 3-12 】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분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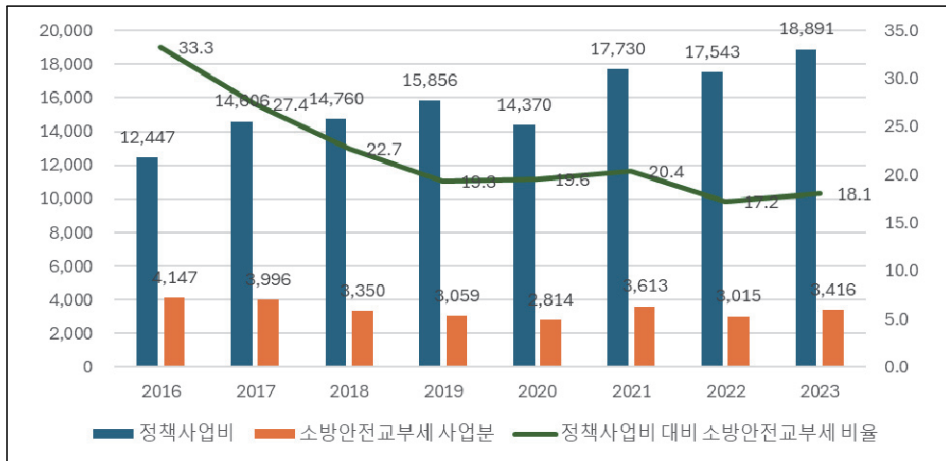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8	2020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비(A)	12,447	14,760	14,370	17,543	18,891	6.1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분(B)	4,147	3,350	2,814	3,015	3,416	-2.7
정책사업비 대비 사업비 비율(B/A)	33.3	22.7	19.6	17.2	18.1	

주 1) 추경이 있는 회계연도는 추경예산 사용  
 2)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전예산을 제외한 소방분만 제시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그림 3-11 】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변화

(단위: 억원, %)



주) 최종예산 기준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자치단체별로 사업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최저 382억원(경남 창원시)에서 최고 2,957억원(경기도)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정책사업비 대비 사업비분 소교세 비율을 살펴보면 최저 9.2%(서울특별시)에서 최고 34.9%(제주특별자치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과 비교할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는 2023년 사업비분 소방안전교부세를 214억원 교부받았으며, 2016년 배분액 230억원 대비 감소폭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크지 않으나, 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통한 정책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정책사업비 대비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은 크게 감소함

**| 표 3-13 | 자치단체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분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			2023년		
	소교세 사업비 분(A)	정책 사업비(B)	소교세 비율 (A/B)	소교세 사업비 분(A)	정책 사업비(B)	소교세 비율 (A/B)
서울	292	1,871	15.6	199	2,168	9.2
부산	244	651	37.5	240	951	25.2
대구	240	520	46.2	170	991	17.1
인천	230	440	52.2	214	1,246	17.2
광주	235	365	64.5	136	550	24.7
대전	198	300	66.1	152	503	30.2
울산	204	400	51.1	143	580	24.7
세종	68	152	44.8	71	196	36.3
경기	349	2,169	16.1	429	2,957	14.5
강원	272	923	29.5	219	1,063	20.6
충북	237	488	48.6	164	862	19.0
충남	270	880	30.7	231	1,212	19.1
전북	261	571	45.7	161	822	19.6
전남	271	585	46.3	199	946	21.0
경북	297	896	33.2	295	1,947	15.1
경남	210	715	29.4	164	1,109	14.8

구분	2016년			2023년		
	소교세 사업비 분(A)	정책 사업비(B)	소교세 비율 (A/B)	소교세 사업비 분(A)	정책 사업비(B)	소교세 비율 (A/B)
제 주	213	386	55.1	148	424	34.9
창 원	55	135	40.7	125	362	34.5

주 1) 추경이 있는 회계연도는 추경예산 사용

2)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전예산을 제외한 소방분만 제시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 인건비 지원 규모

-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은 2023년 기준 5,482억원으로, 인건비 지원분이 신설된 2020년 3,318억원에서 연평균 18.2%의 증가추세를 보임
-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비 대비 인건비 지원분을 비교할 경우 2023년 9.8% 수준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지원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을 통한 인건비 지원은 2017년부터 추진된 현장필수인력 소방공무원 2만명만 해당되나, 향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소방안전교부세 규모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또한 2020년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인건비 지원 수준이 안정적이지 않음
- 담배분 개별소비세 징수액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규모가 결정되고 인건비 지원은 이에 따라 정률로 연동되고 있어 승진, 보수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할 경우 재원의 안정성이 다소 부족함

표 3-14 |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분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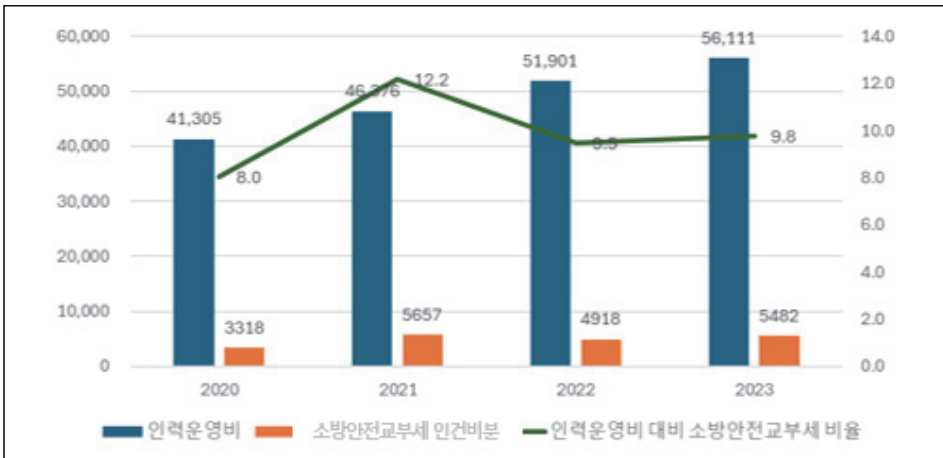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비(A)	41,305	46,376	51,901	56,111	10.8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B)	3,318	5,657	4,918	5,482	18.2
정책사업비 대비 사업비 비율(B/A)	8.0	12.2	9.5	9.8	

주 1) 추경이 있는 회계연도는 추경예산 사용  
 2)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전예산을 제외한 소방분만 제시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그림 3-12 |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규모 변화

(단위: 억원, %)



주) 최종예산 기준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는 전체 총원인력 대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총원한 인력 비율에 따라 교부되고 있음. 인건비 지원 교부액은 최저 74억원(세종특별자치시)에서 최고 472억원(경상남도)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인력운영비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저 1.6%(서울특별시)에서 최고 16.5%(전라남도)으로 지역의 소방 인력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인천광역시는 2023년 인건비분 소방안전교부세를 208억원 교부받았으며, 전체 인력운영비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9%로 타 지방자치 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표 3-15 | 자치단체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			2023년		
	소교세 인건비 분(A)	인력 운영비(B)	소교세 비율 (A/B)	소교세 인건비 분(A)	인력 운영비(B)	소교세 비율 (A/B)
서울	31	6,462	0.5	114	7,327	1.6
부산	136	2,400	5.7	205	3,318	6.2
대구	109	2,125	5.1	155	2,581	6.0
인천	123	2,135	5.8	208	3,020	6.9
광주	57	1,208	4.7	82	1,482	5.5
대전	71	1,309	5.4	79	1,517	5.2
울산	72	946	7.6	117	1,230	9.5
세종	46	302	15.2	74	481	15.4
경기	557	7,667	7.3	864	9,619	9.0
강원	289	2,376	12.2	479	3,550	13.5
충북	178	1,466	12.1	330	2,327	14.2
충남	281	2,173	12.9	518	3,317	15.6
전북	213	1,820	11.7	342	2,742	12.5
전남	333	2,138	15.6	575	3,485	16.5
경북	386	3,250	11.9	590	4,565	12.9
경남	267	2,241	11.9	472	3,627	13.0
제주	94	630	14.9	153	1,044	14.7
창원	75	660	11.4	81	878	9.2

주 1) 추경이 있는 회계연도는 추경예산 사용

2)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전예산을 제외한 소방분만 제시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3. 소방안전교부세의 문제점

#### □ 재원규모의 불충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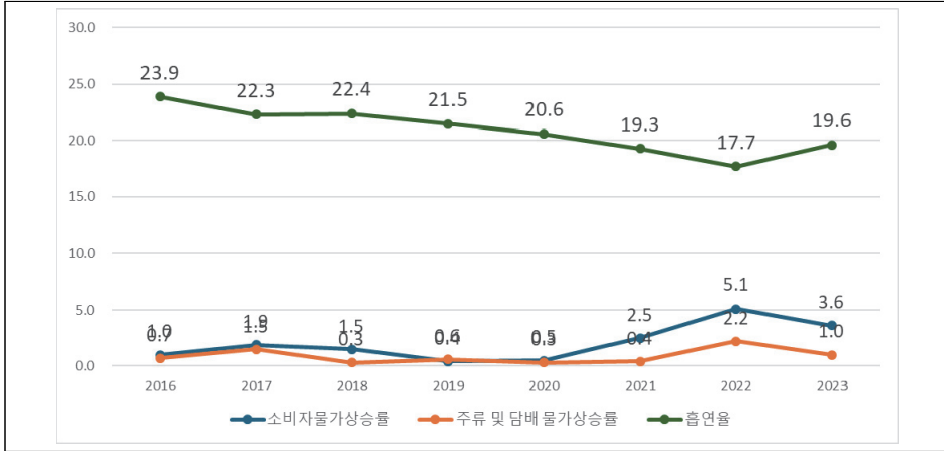
- 소방안전교부세는 정책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재원 규모가 크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한계가 있음
- 특히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자체별 배분 비율 또한 지역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수요 및 각 자치단체의 소방행정서비스의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분방식의 개선 또한 필요함

#### □ 세수 안정성의 부족

- 소방안전교부세의 세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담배 구매량에 따라 세수의 변동성이 발생함. 금연을 장려하는 현 상황에서 향후 금연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소방안전교부세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2015년부터 4,500원으로 책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담배가격은 지속되고 있음
-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담배가격은 변동이 없으나, 흡연율은 2016년 23.9%에서 2023년 19.6%로 감소하여 담배 소비량이 향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담배가격의 인상 없이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감소 등으로 인해 소방안전교부세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림 3-13 |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담배·주류 물가상승률 비교**

(단위: %)



주) 최종예산 기준

자료: 연도별 소방청 통계연보

-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향후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장비 개선 등에 있어서도 소방안전교부세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소방안전교부세의 세수 안정성은 더 크게 저하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세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분 개별소비세 외에 다른 세원 마련 혹은 기존 세원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 4 장

---

#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분담 수준 분석 및 재원확충 방안

제1절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분담  
수준 분석

제2절 인건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



#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분담 수준 분석 및 재원확충 방안

## 제1절

##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분담 수준 분석

### 1. 분석방법

#### □ 분석 고려사항

-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지원은 2017년부터 2022년간 법정 소방인력 부족분에 대한 총원만을 지원하므로,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는 소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시 소방공무원 인건비 산정을 위한 총원 소방공무원 수는 소방공무원 총원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전년도 6월 30일까지 조례에 반영된 소방인력을 기준으로 함
  - 이에 따라 현장인력을 제외한 인력의 총원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당초 소방공무원 총원계획에서는 19,871명을 대상으로 하나 실제 지급 소방안전교부세 지급 시에는 17,148명을 대상으로 함
-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17,148명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해당 인력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당초 총원계획 인력에 추가로 인력이 총원되어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급 대상에 대한 별도 인건비 정보는 존재하지 않음
- 총원된 인력 또한 타 부서로 전보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인력이 현 시점에서는 현장인력이 아닐 수 있음
  - 소방공무원은 내근직, 현장직 등 직무특성에 따라 수당 등이 상이하므로 추정 방식에 따라서 총원인력의 인건비가 과다계상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다계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분석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위험직무 종사자, 특수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특수근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됨

### □ 분석 방법

-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분석은 개별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당해연도 총원인력을 곱하여 산정함
  - 인건비 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인건비에서 신규 채용 인력만을 안분하여 추정하는 방식도 활용되나 전체 인건비의 경우 모든 직급의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 1인당 평균 인건비가 높게 산정될 우려가 있음
- 개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을 합하여 산정하며, 기준 인건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함
  - 이러한 기준으로 했을 경우, 2020년 기준 1인당 공무원 인건비는 3,490만원 (2020년 채용 공무원)~4,490만원(2017년 채용 공무원) 수준에 분포함. 이는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보전 시 가정하였던 1인당 공무원 인건비 5,000만원에 못미치는 수준임

【표 4-1】 인건비 산정 시 포함항목

건비 산정 시 포함항목	인건비 산정 시 불포함 항목
봉급, 정근수당 및 가산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방호활동비,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공무원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맞춤형복지, 기본경비

- 총원 이후 일정 수준이 지난 인력은 승진을 하므로 승진에 대한 인건비 반영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 직급 중 가장 하위직급인 소방사로 채용되어 4년 후 소방교로 근속승진을 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연구에서는 인건비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2017년부터 사례의 소방공무원 실제 급여액을 받아 이를 분석에 활용함
  - 소방공무원의 총원 시점이 2017년의 경우 12월이며 그 외의 해에서도 채용

- 시점이 일관적이지 않음. 이로 인해 호봉 승급, 승진 등의 시점이 상이하여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인건비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에서 제공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원 인력 중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총원인력에 대해 채용시점부터 2024년까지의 인건비 지급액 자료로 인건비 단가를 설정하여 인건비를 분석함
  - 다만 인천광역시에서 제출한 총원인력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기준을 바탕으로 별도로 연도별 총원인력의 1인당 인건비를 추정하여 비교함
    - 별도로 추정한 연도별 1인당 인건비는 4년 근속근무를 통해 5년차에 근속 승진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7년 총원 인력의 경우 12월에 채용되었으므로 2018년 총원자와 동일한 호봉인상과 승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함
    -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한 인건비 표본의 경우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추정한 인건비에서는 연가는 모두 소진하여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고,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으며, 시간외수당은 50시간을 부여함

## 2. 분석결과

### □ 전체 지역의 인건비 부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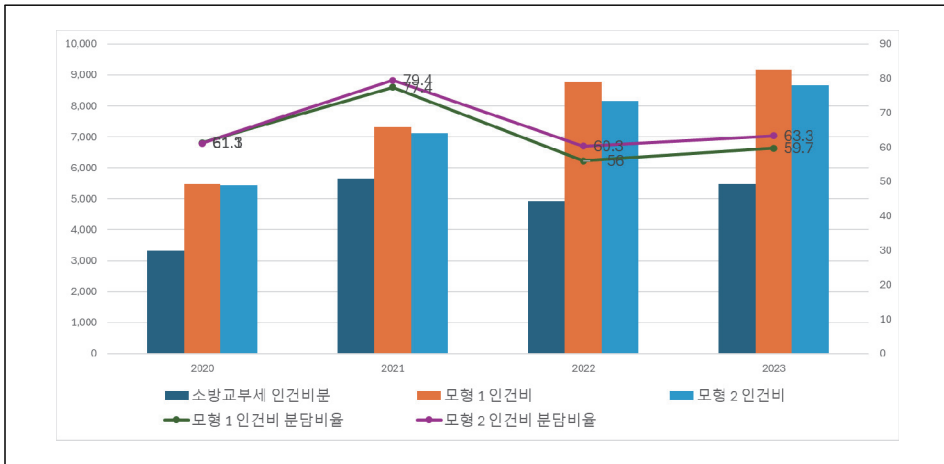
-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17,148명에 대한 2020년부터 2023년간의 인건비 지급액을 추정한 결과 2020년 5,470억원, 2023년 9,180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인건비는 분석기간동안 연평균 18.6% 증가함
- 동 기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분으로 인건비를 부담한 비율은 2020년 61.3%에서 2023년 59.7%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 비율은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변동에 따라 부담 비율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장대응인력에 대한 총원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 특히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은 5년으로 2017년 채용된 인력 1,496명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근속승진을 통해 소방장으로 승진하므로 총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4-1|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부담 수준

(단위: 억원, %)



#### □ 인천광역시의 인건비 부담 변화

-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655명에 대한 2020년부터 2023년간의 인건비 지급액을 추정한 결과 2020년 199억원, 2023년 349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인건비는 분석기간동안 연평균 20.6% 증가함
  - 연도별 채용 인원이 시·도마다 상이하여 연평균 증가율 등이 상이하게 나타남
- 동 기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분으로 인건비를 부담한 비율은 202년 61.8%에서 2023년 59.6%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 비율은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변동에 따라 부담 비율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시·도 분석 결과와 유사한 수준의 부담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채용 시점 및 각 시도별 인건비성 경비의 차이에 따라 시·도의 인건비가 상이할 수 있어 실제 충족비율은 시·도 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산정한 결과에서도 2020년 200억원에서 2023년 329억원으로 연평균 18.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3】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분담 분석 결과: 인천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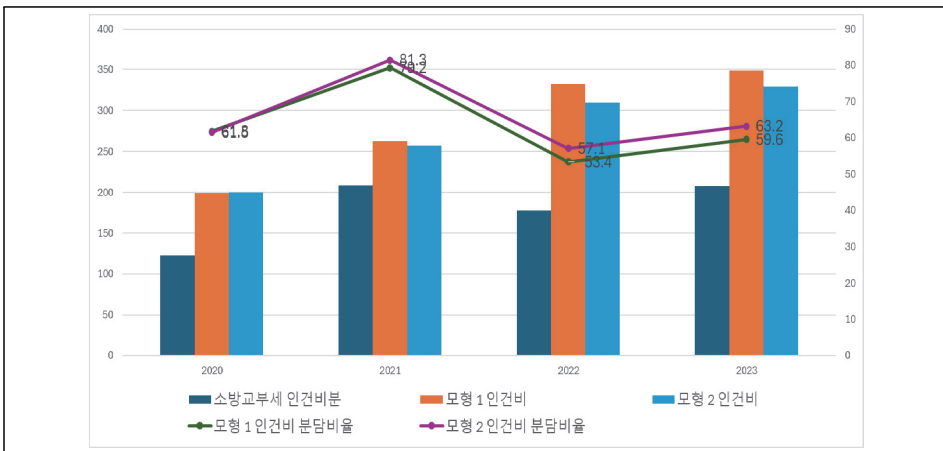
(단위: 명,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총원 공무원 수(누적)		454	562	655	655	13.0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123	209	177	208	19.2
모형 1: 표본 인건비 활용	인건비 규모	199	263	332	349	20.6
	인건비 분담 비율	61.8	79.2	53.4	59.6	-
모형 2: 인건비 추정치 활용	인건비 규모	200	257	310	329	18.0
	인건비 충족 비율	61.5	81.3	57.1	63.2	-

-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충족률은 인천광역 시도 전국 총원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충족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총원인력의 승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충족률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4-2】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분담 수준: 인천광역시

(단위: 억원, %)



□ 퇴직공무원 인건비 감소를 고려한 인건비 부담 변화

-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부담과 관련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원액은 퇴직 공무원의 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비용이고, 이를 고려할 경우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 보전이 이루어진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퇴직공무원 수와 해당 연도의 증원 인력 변화를 살펴보면 퇴직한 소방공무원 수에 비해 총원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공하는 직종별 퇴직공무원 자료가 2017년부터 제공되지 않아 2020년부터 비교하였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 공무원 수는 평균 1,068명임을 감안하면, 2만명 총원이 이루어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8,247명 수준의 퇴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보전하는 인건비 적용 대상이 17,148명임을 감안하면 2023년까지 퇴직공무원이 8,901명 적음

【표 4-4】 연도별 총원 및 퇴직 공무원 수 변화

(단위: 명,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합계
퇴직 공무원 수	938	841	1,200	1,295	4,274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대상 증원 공무원 수	3,636	3,229	1,527	-	8,392
순증인력	2,698	2,388	327	-1,295	5,118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연도별 직종별 퇴직공무원 수 통계

-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감소하므로, 순증 공무원 인건비 부담에 있어 소방공무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을 고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액은 2020년 1,329억원에서 2023년 2,561억원으로 증가함
  - 퇴직공무원 1인당 급여가 신규 채용 1인당 급여에 비해 2배 이상 높지만 해당 기간 총원인력수가 퇴직공무원 수에 비해 약 3~4배 이상 많아 공무원

퇴직으로 발생한 급여 감소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해도 해당 총원  
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함

- 특히 총원인력의 인건비는 호봉인상, 승진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퇴직인력의 인건비 감소분이 증가하더라도 향후에도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표 4-5】 퇴직공무원 인건비 감소분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단위: 명, 억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소방안전교부세 지급 대상 인건비(a)	5,470	7,307	8,785	9,180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b)	3,318	5,657	4,918	5,482
소방공무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액 추정치(c)	823	738	1,053	1,137
지자체 순부담액(d=a-b-c)	1,329	912	2,814	2,561

주: 퇴직공무원의 인건비는 소방위 31호봉(2023년 기준액)으로 퇴직하였을 경우로 가정하여 봉급,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8,779만원으로 추정하여 계산

## 제2절

## 인건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

### 1. 개선방향

#### □ 중앙정부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재정 책임성 강화

-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부담의 대상이 되는 2017년~2022년 총원된 약 2만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대한 재정책임을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을 통해 하고 있으므로, 2만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의 해소는 중앙정부가 보다 높은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함
  -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경찰공무원의 경우 자치경찰 또한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공무원 수당 및 자치경찰 사무 처리비용을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임

#### □ 지방재원 재원을 활용한 재원 확충 방안 지양

-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확충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안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서 지방세 개편을 통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타 분야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은 지양함
- 보통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재원이거나 배분방식 변경 등으로 시·도 및 시·군·구 간 유·불 리가 발생하는 방안 또한 지양함

#### □ 2017년~2022년 간 중앙주도로 총원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부족 해소를 우선시함

-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에 따라 전체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중앙정부 재원 부담방안의 마련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나 개산병안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17년~2022년까지 이루어진 2만명 충원인력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재원 확충에 사용될 재원의 목적 부합성, 충분성, 안정성,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의 검토를 통한 현실성 확보**

- 소방분야의 재원확충과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었으나 해당 방안들을 통한 재원 확충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세원의 목적 부합성, 충분성, 안전성,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을 토대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표 4-6 | 재원 확충방안의 실현가능성 관련 검토 기준**

적용기준	내용
목적성	• 세입원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재원을 소방 인건비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
충분성	• 소방 인건비 부족 규모를 총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재원이 충분할 것
안정성(신장성)	• 해당 재원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건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
이해관계자 간 갈등 수준	• 재원 활용 시 재원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수준이 낮고 및 정치적 수용성이 높을 것

## 2. 인건비 부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 **1안: 지방교육세분 담배소비세 활용**

- 2025년 일몰되는 지방교육세분 담배소비세를 활용하여, 일몰되는 재원의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분담액을 증가하는 방안임
- 담배소비세의 43.99%인 15,771억원이 현재 지방교육재정 재원으로 사용

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2026년 일몰되므로, 일몰되는 재원의 22.7%(전체 담배소비세의 10% 수준)를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분 규모는 1.5조원 규모로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과 관련하여 부족한 재원 규모인 3,698억원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재원으로 판단됨. 특히 지방교육세분 활용분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을 높일 경우 장기적으로도 2만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건비 전부 부담이 가능함
- 다만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와 담배소비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속되는 금연정책으로 인해 연평균 증가율이 2017~2023년간 연평균 -0.2%로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2만명에 대한 인건비 충당에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 전체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특히 담배소비세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소방안전교부세로 재원 활용에 세원의 설치 목적과 해당 재원의 소방 안전비 확충에 목적 부합성을 지니고 있음
- 다만 지방교육세분 일몰과 관련하여 교육재정 재원의 지방재정으로의 편입 등에 대해 교육당국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확충을 위한 재원 사용 시 교육당국 등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표 4-7】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배분액 현황 및 개선시 재원 증가액

구분	연도별 규모(억원)				연평균 증가율	인건비 재원 증가액	고려사항
	2017	2019	2021	2023			
담배 소비세	36,026	33,577	35,579	35,851	-0.1%	3,5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원 정체</li> <li>• 교육당국과의 갈등</li> </ul>
지방교육세 배분액	15,848	14,777	15,651	15,771			

주) 담배소비세는 징수액 기준

## □ 2안: 담배분 개별소비세 배분 비율 인상

- 현재 담배분 개소세 중 25%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2만명 인건비 부족분의 해소를 위해 담배분 개소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65%로 상향하고, 인상분은 인건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담배분 개소세의 전체 규모는 2023년 기준 2.2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해당 재원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을 인상은 중앙정부 재원을 통해 소방공무원 총원 인력의 인건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을 지니며, 현재 전체 재원의 전체 규모 또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임
- 다만 담배분 개별소비세 또한 전술하였던 담배소비세의 일부이므로, 흡연인구 감소 등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세수의 신장성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담배소비의 변동에 따라 세입액 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세수의 안정성에 있어서도 다소 부족함
- 담배분 개소세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원의 목적과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이 부합한다고 판단됨
- 또한 담배분 개소세의 경우 담배 소비세와 달리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이 없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분의 활용에 비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소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 활용 시에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사용되던 재원을 소방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와의 갈등 소지가 적었으나 담배분 개소세의 경우 일부를 중앙정부가 사용하고 있어 담배분 개소세를 통한 재원 확충 시 중앙정부 재정당국과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표 4-8 | 담배분 개별소비세 현황 및 개선시 재원 증가액**

구분	연도별 규모(억원)				연평균 증가율	인건비 재원 증가액	고려사항
	2017	2019	2021	2023			
담배분 개별소비세	25,672	19,190	23,004	21,927	-2.6%	4,394	• 재원 감소
소방안전 교부세 인건비분	-	-	5,657	5,482			

주)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공개자료가 없어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기준으로 추정

### □ 3안: 지역자원시설세 개편

- 현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표준세율을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을 정대시키지 않고 2만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표준세율은 현행 0.04~0.12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0.05~0.15%로 조정하면 현행 15,342억원 대비 4,725억원 증가함
- 지역자원시설세의 개편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2만명 충원 소방 인건비의 부족분을 해소할 수준의 충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세수의 신장성을 고려할 경우에도 안정적인 재원으로 판단됨
-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현재 소방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유재원이므로 세율 조정 및 과세표준 변경을 통한 세입 확충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인건비 충당에 사용하는 것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의 목적에 부합함
- 다만 중앙정부의 재원을 통해 인건비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의 확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의 재원 확충 방향과의 정합성은 다소 부족함
- 지역자원시설세의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충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해소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나 지문의 지방세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표 4-9 |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및 개선 시 자원 증가액**

구분	연도별 규모(억원)				연평균 증가율	인건비 재원 증가액	고려사항
	2017	2019	2021	2023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12,286	13,999	15,548	15,342	3.8%	4,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원으로 해결</li> <li>• 주민 세부담 증가</li> <li>• 지역간 세입격차</li> </ul>

주) 지방세연구원 연구결과 과표체계 개편 효과 17.5%, 세율조정 효과 13.3% 반영

# 제 5 장

##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 제1절

## 연구 결과 요약

## □ 연구 개요

-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루어진 약 2만명의 소방공무원 확충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지원이 충원된 공무원의 인건비의 충당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존 소방직 공무원은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었으나 소방공무원의 법정 정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정부의 주도로 약 2만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함
  - 2020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대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충원된 소방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방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봉급 인상, 호봉인상, 그리고 충원된 소방직 공무원의 충원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2020년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기존 인력 및 현재 충원되고 있는 인력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 인건비 부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2장에서는 충원된 소방공무원의 중앙과 지방의 재원 분담 논의를 위해 소방사무의 특성과 소방분야 재정구조 및 소방교부세의 기능, 그리고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의 쟁점 및 고려사항을 검토함
  -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소방사무의 성격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의 수준을 논의할 수 있으므로, 소방사무의 성격에 있어서의 외부성, 그리고 업무량의 변화 등을 검토함
  -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부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분야의 재정 구조, 그리고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소방교부세의 기능 등을 검토함

-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쟁점과 인건비 재원 분담과 관련하여 고려사항을 검토함
- 제3장에서는 지방의 소방분야 재정 및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지방 소방분야 재정을 세입 및 세출로 구분하여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세입 및 세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함
- 소방안전교부세의 운영 현황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규모 시도별 지원규모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도출함
- 제4장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지원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인건비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함
  - 2017년~2022년까지 각 연도별로 충원된 실제 공무원 표본의 인건비 지급액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지급된 연도별 인건비 수준을 분석하고 퇴직공무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잔여분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 수준을 분석함
  - 인건비 부담수준을 고려할 때 부족한 인건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평가하고, 대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함

#### □ 소방사무의 특성과 정부 간 인건비 재원분담의 고려사항

- 소방사무는 기존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그리고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나, 이에 추가하여 다양한 인위적·자연적 재난·재해와 관련된 업무가 추가되고 있으며, 재해·재난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업무량 또한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소방의 업무량 증가 외에도 대규모 재해·재난의 발생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재해·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소방사무의 외부성이 커지고 있음
  -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방행정서비스가 약화될 경우에도 부정적 효과가 해당 자치단체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성으로 인해 인접 지방자치단체까지 영향을 미침

- 특히 최근 의료인력의 대규모 사직에 따른 의료체계의 약화로 구급서비스에 있어서도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도 소방사무의 외부성의 강화를 나타내는 사례임
-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사무'의 성격을 지닌 사무가 다수 혼재되어 있어 소방 사무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방사무의 외부성, 그리고 다수의 공동사무에도 불구하고 소방분야 재정에서 지방이 부담하는 비중이 높으며, 목적세 기반의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재원 분담 수준은 크지 않음
  -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소방재정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과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초 소방장비 및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2017년~2020년까지 이루어진 약 2만명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을 위해 2020년부터 인건비를 지원함
- 소방공무원의 중앙-지방 간 인건비 분담과 관련하여 쟁점은 자치사무로 되어 있는 소방사무에 대한 재정책임 귀속 여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주체의 결정,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약 2만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불충분성 등임
  - 소방사무의 외부성과 다수의 공동사무를 고려할 경우 중앙정부의 부다 높은 재정책임성 확보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소방공무원 약 2만명에 대한 충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책임지는 것이 필요함. 소방안전교부세 개편 당시 산정하였던 개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단가는 승진 및 봉급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아 지방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임
  - 장기적으로는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전환

되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 지방 소방분야 재정 및 소방안전교부세 현황 분석 결과

- 지방분야의 소방분야 재정에서 지방의 부담수준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소방분야의 재정 구조가 세입 안정성 등이 감소하고,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경직성 지출이 많아 취약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세입과 관련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로서 지방 소방분야 재정의 가장 주요한 세원이나, 지출 증가수준에 비해 세수 신장 수준이 높지 않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재원 확보 또한 담배소비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특성상 금연정책의 지속으로 세수 안정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하는 실정임
  -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재정규모 8.0조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6.8조원으로, 전체 소방 재원의 74.1%를 일반회계 전출금이 충당함
  - 소방분야의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4% 증가하고 있으나, 소방분야 전체 세입 증가율은 8.8%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 신장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자원시설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 격차 등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 안정성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또한 최근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은 유지하더라도 장비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정책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소방행정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세출과 관련하여 세출의 상당 부분은 소방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 개선, 그리고 화재예방 등에 대한 정책사업비는 지출이 크지 않은 구조이며 인건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그리고 인건비의 지출 절감 등이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할 경우 소방분야의 지출의 경직성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경우 인건비로 인한 경직성은 완화될 수 있으나 지역자원 시설세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한 추가 세입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향후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할 경우 신규세원 마련 등을 통한 소방의 세입구조 개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소방안전교부세는 재원 규모가 크지 않고, 소방안전교부세 또한 담배분 개별 소비세라는 단일 세원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조정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분야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5%에 불과하며, 특히 소방안전교부세는 202년 및 2023년 교부액이 2021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세수의 안정성이 부족함
- 또한 금연정책의 강화로 인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분 개별 소비세는 정체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증가하는 소방분야의 인건비 및 사업비 충당에 있어 소방안전교부세의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됨

#### □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분담 분석 결과

○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분담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된 소방공무원의 표본을 선정하여, 해당 표본의 충원이후 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인건비 총액을 분석하여 충원인력 1인당 인건비를 산출함

- 소방공무원은 내근직, 현장직 등 직무특성에 따라 수당 등이 상이하므로 추정방식에 따라서 충원인력의 인건비가 과다 혹은 과소 계상될 우려가 있어서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한 소방공무원의 실제 인건비를 활용함
- 특히 소방공무원 충원 시 경력에 따라 호봉 등이 상이하므로 보수적으로 인건비를 산출하기 위해 최저호봉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인건비를 사용함
- 인건비성 경비인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보수적인 인건비 분석을 위해 제외함

- 소방공무원의 규모는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 시 활용되는 현장인력 수인 17,148명을 사용함
- 소방공무원 총원에 따른 인건비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의 분담 비율은 2017년 61.3%에서 2023년 59.7% 수준으로 인건비 분담 수준이 2020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도출됨
  - 총원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2020년 5,470억원에서 2023년 9,180억원으로 분서기간 동안 연평균 18.8% 증가함
- 소방안전교부세 또한 동기간 연평균 18.2% 증가하였으나 소방공무원의 승진 등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나며,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감소 등으로 인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분담 수준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소방공무원의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감소분을 고려할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 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2020년 1,329억원, 2023년 2,561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방공무원이 분석기간동안 2020년 938명, 2023년 1,295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해당 소방공무원은 직급 및 호봉이 높아 인건비 감소가 크게 발생하나 해당 인건비의 감소로도 총원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 소방공무원 인건비 재원 마련의 개선방안

- 소방공무원 인건비 재원 마련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거나, 지역간 자원배분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방안은 지양하여 마련함
- 2만명 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확충방안은 ①2026년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 일부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소방인건비에 활용하는 방안, ②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소방안전교부세로의 배분 비율의 상향,

## ③ 지역자원시설세의 개편 등을 제시함

- 인건비 부족분 3,698억원에 대해 지방교육세분 담배소비세 활용은 3,585억원, 담배분 개별소비세 배분 비율 인상은 4,394억원, 지역자원 시설세 개편은 4,725억원의 재원이 확충될 수 있는 것으로 도출되어 개선방안을 통한 인건비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담배소비세의 활용은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담배분 개별소비세분 활용은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재정당국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자원 시설세의 활용은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가중시켜 갈등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제2절

## 정책 제언

### □ 소방사무에 대한 외부성 및 공동사무의 분석을 통한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 원칙 및 관계 법률 정비 필요

- 소방 관계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소방사무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자치사무, 국가사무, 공동사무를 중심으로 사무 특성을 분석하여 사무특성에 기인한 재정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사무에 있어서도 사무 처리와 관련된 권한, 사무의 외부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소방분야의 사무가 잔여적 기능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사무로 인식하고,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할 소방사무를 도출하여 해당 사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사무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체 구축과 이를 통한 조정이 필요함
- 소방사무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명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소방 조직에 관한 법률 제정 등과 관련한 법안 등이 발의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사무 구분 및 공동사무의 처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5-1】 소방사무의 중앙·지방 사무구분 관련 주요 법률(안) 발의 내용

법률안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제2019157호, 2021.3.26.)	개별 소방관계 법률에서 국가, 공동, 자치사무로 구분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이 불일치하여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자치사무의 내용 중 소방사무 삭제
소방조직법안 (오영환의원 등, 제2114657호, 2022.2.4.)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조직과 지휘·감독체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에 소방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률안 제출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제2115134호,	소방사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함 *국가사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화재의 예방·경계·

법률안	주요내용
2022. 4.5.)	진압 및 조사,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와 지원 및 구급·구조, 소방대상물 및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소방 기술 개발과 소방산업 진흥 및 발전, 소방안전교육·홍보 및 국제 기구의 국제협력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

자료: 유상엽 외(2025) 재구성

**□ 국가직 공무원 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 필요**

- 소방사무가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자치경찰 사례를 준용하여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소방공무원 전체 인건비가 약 5.6조원 규모이므로 이를 일시에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므로 현 시점에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점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인건비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감소분이 발생하므로 향후 신규 채용 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경우 장기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다만 전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됨
-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분담 비율을 설정하여 점차적으로 이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중앙정부의 재원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고, 사회복지 등 타 분야의 재원분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방안전교육부세 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권 등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신세원 발굴 필요**

- 장기적으로는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신세원 발굴이 필요함. 담배소비세, 지역

자원시설세에 의존하는 소방 재원은 세수의 안정성 및 충분성 등에 한계가 있고 결국 세수의 취약성이 심화될 수 있음

- 소방의 기능이 부수적인 행정기능이 아니라 재난의 복잡화,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방사무의 다양화 등으로 정부의 주요 행정서비스로 기능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목적세 외에도 보통세를 활용한 소방재원 확충 방안이 필요함
- 신세원 발굴과 관련하여 화재보험료,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보험료,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소비 등 소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물품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음
  - 과거부터 화재보험료, 보험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대상 확대가 지속적으로 제안되었으며, 이는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세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이영웅 외, 2024)
  -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보험 납부액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방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며, 이 외에도 미국, 뉴질랜드, 독일 등은 일반재원에서 소방 재원을 확보함
  - 특히 독일의 경우 공동의 손해·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관계를 근거로 보험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보험세에 부과하여 소방세(fire protection tax)를 두고 있으며, 이는 화재보험료를 재원으로 설치됨. 소방세를 통해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활용하고 있음(이영웅 외, 2024)
  - 원 발굴은 국민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민간부문의 소비나 생산에 대한 과세는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민간부문에서의 저항, 그리고 민간부문이 납세를 국민에게 전가하여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참고문헌

- 김성주, 여효성. (2020). 소방직 국가직화 이견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개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재호, 임재만. (2019). 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47(4): 270-297.
- 김지수. (2024). 2024 담배소비세 현황과 이해.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흥환. (2017). 소방행정의 변화에 따른 소방재정구조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흥환, 이유진. (2018). 소방행정의 변화에 따른 소방재정구조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흥환, 박찬신. (2022). 지방 소방재정 확충 방안 검토: 소방사무 인력 분석을 통한 자원 보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 박남권, 함승화. (2021).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설치 의의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7(20): 218-225.
- 손희준. (2015). 안정적인 지방소방재원 확충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 35(2): 1-25.
- 송상훈. (2016). 경기소방 운영효율화 연구. 경기연구원.
- 이영웅, 이현우, 장현경. (2024). 지방재정 부담 과중에 따른 소방 자원 확보 방안. 경기연구원.
- 이원희, 조임근, 나현민. (202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확보 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 이주원. (2024). 2024 지역자원시설세 현황과 이해. 한국지방세연구원.
- 임상빈, 김보영, 임현종, 고은비. (2019). 지방세 소방재원조달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장중돈, 이종호. (2018). 소방안전교부세의 운영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32(6): 117-125.
- 정창훈, 임종혁, 주윤창. (2018).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초기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1(3): 137-161.
- 한재명, 장백산. (2023). 소방안전교부세 분야 간 배분비율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 2025-18

중앙 및 지방 간 소방재원 분담의  
개선방안 연구: 소방공무원 인건비  
확보를 중심으로

저 자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발 행 일	2025년 7월 2일
발 행 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전 화	033-769-9999
홈 페이지	<a href="http://www.krila.re.kr">http://www.krila.re.kr</a>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